



통일부 법령집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Code of La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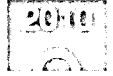
통일부

목차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2.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9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1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9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5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3
7.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27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28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289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5
9.	통일교육 지원법·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381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387
10.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9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89호, 2010. 3.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

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0.3.26>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 제 6 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 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 9 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 3 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의료기관 등)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

협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15조의3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 4 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 5 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8조의2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3.26]

-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

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189호, 2010. 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 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통일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 (협의회의 운영)**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 (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 6 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 (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8 조 (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9 조 (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 3 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 4 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

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 5 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0조 (정관) ①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075호, 2010. 3.15>

- 제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 조 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0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87> 까지 생략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 제 3 조 (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 4 조 (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 조 (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제6 조 (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 제7조 (임원)** ①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제11조 (이사회)** ①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 (남측편찬위원회)** ① 거래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북한 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 ②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 (사무처)** ① 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6조 (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결산보고)** ①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지도·감독)**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 까지 생략
 <155>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한다.

<1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

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 3 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

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 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납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납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정착금 등) 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남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남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남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 9 조 (피해위로금) 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남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0조 (보상금)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애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1조 (의료지원금)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남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남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남북피해자는 남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지원에 관

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서 부분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재심)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①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 (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남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호적등재)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남북으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때에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남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단체 지원)**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남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 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남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6]
[대통령령 제21999호, 2010. 1.26,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 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남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 (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남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 조 (납북피해자 지원단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둔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북피해자 지원단의 장을 겸임하고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납북피해자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 8 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①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위로금의 금액)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한다.

제11조 (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2조 (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별표 1에 따른 호프만계수

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남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5조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상이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 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납북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6조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 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9조 (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제20조 (지급기관)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갈게 된 자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중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사업비의 신청)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서 및 결산서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제24조 (과태료 부과정수 및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1999호, 2010. 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3조제2항 관련)

남자				여자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 월)	호프만계수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 월)	호프만계수
연	월			연	월		
0	0	444	148.89085983	0	0	480	166.23038844
0	1	444	149.10597611	0	1	480	166.48038844
0	2	444	149.32173484	0	2	480	166.73117159
0	3	444	149.53813899	0	3	480	166.98274172
0	4	444	149.75519155	0	4	480	167.23510268
0	5	444	149.97289552	0	5	480	167.48825833
0	6	444	150.19125394	0	6	480	167.74221259
0	7	444	150.41026985	0	7	480	167.99696938
0	8	444	150.62994631	0	8	480	168.25253265
0	9	444	150.85028642	0	9	480	168.50890638
0	10	444	151.07129327	0	10	480	168.76609459
0	11	444	151.29296999	0	11	480	169.02410131
1	0	444	151.51531973	1	0	480	169.28293060
1	1	444	151.73834564	1	1	480	169.54258656
1	2	444	151.96205093	1	2	480	169.80307330
1	3	444	152.18643879	1	3	480	170.06439497
1	4	444	152.41151245	1	4	480	170.32655575
1	5	444	152.63727517	1	5	480	170.58955984
1	6	444	152.86373020	1	6	480	170.85341148
1	7	444	153.09088084	1	7	480	171.11811493
1	8	444	153.31873040	1	8	480	171.38367448
1	9	444	153.54728222	1	9	480	171.65009446
1	10	444	153.77653965	1	10	480	171.91737922

(공) 군사정전에 관한 법령 체계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11	444	154.00650607	1	11	480	172.18553315
2	0	444	154.23718488	2	0	480	172.45456066
2	1	444	154.46857950	2	1	480	172.72446619
2	2	444	154.70069338	2	2	480	172.99525423
2	3	444	154.93352998	2	3	480	173.26692927
2	4	444	155.16709280	2	4	480	173.53949587
2	5	444	155.40138535	2	5	480	173.81295859
2	6	444	155.63641117	2	6	480	174.08732204
2	7	444	155.87217381	2	7	480	174.36259086
2	8	444	156.10867687	2	8	480	174.63876972
2	9	444	156.34592395	2	9	480	174.91586331
2	10	444	156.58391868	2	10	480	175.19387639
2	11	444	156.82266473	2	11	480	175.47281371
3	0	444	157.06216577	3	0	480	175.75268010
3	1	444	157.30242551	3	1	480	176.03348038
3	2	444	157.54344768	3	2	480	176.31521943
3	3	444	157.78523604	3	3	480	176.59790217
3	4	444	158.02779438	3	4	480	176.88153354
3	5	444	158.27112649	3	5	480	177.16611852
3	6	444	158.51523622	3	6	480	177.45166213
3	7	444	158.76012743	3	7	480	177.73816943
3	8	444	159.00580400	3	8	480	178.02564550
3	9	444	159.25226984	3	9	480	178.31409548
3	10	444	159.49952890	3	10	480	178.60352454
3	11	444	159.74758514	3	11	480	178.89393787
4	0	444	159.99644256	4	0	480	179.18534073
4	1	444	160.24610517	4	1	480	179.47773839
4	2	444	160.49657704	4	2	480	179.77113618
4	3	444	160.74786224	4	3	480	180.06553945

4	4	444	160.99996487	4	4	480	180.36095360
4	5	444	161.25288907	4	5	480	180.65738409
4	6	444	161.50663900	4	6	480	180.95483638
4	7	444	161.76121886	4	7	480	181.25331600
4	8	444	162.01663286	4	8	480	181.55282851
4	9	444	162.27288527	4	9	480	181.85337952
4	10	444	162.52998035	4	10	480	182.15497468
4	11	444	162.78792243	4	11	480	182.45761967
5	0	444	163.04671585	5	0	480	182.76132023
5	1	444	163.30636497	5	1	480	183.06608213
5	2	444	163.56687420	5	2	480	183.37191120
5	3	444	163.82824798	5	3	480	183.67881330
5	4	444	164.09049078	5	4	480	183.98679434
5	5	444	164.35360709	5	5	480	184.29586028
5	6	444	164.61760144	5	6	480	184.60601710
5	7	444	164.88247840	5	7	480	184.91727087
5	8	444	165.14824256	5	8	480	185.22962768
5	9	444	165.41489855	5	9	480	185.54309365
5	10	444	165.68245103	5	10	480	185.85767499
5	11	444	165.95090470	5	11	480	186.17337792
6	0	444	166.22026429	6	0	480	186.49020873
6	1	444	166.49053456	6	1	480	186.80817376
6	2	444	166.76172031	6	2	480	187.12727937
6	3	444	167.03382637	6	3	480	187.44753202
6	4	444	167.30685762	6	4	480	187.76893817
6	5	444	167.58081895	6	5	480	188.09150436
6	6	444	167.85571531	6	6	480	188.41523718
6	7	444	168.13155167	6	7	480	188.74014326
6	8	444	168.40833305	6	8	480	189.06622930

6	9	444	168.68606449	6	9	480	189.39350202
6	10	444	168.96475109	6	10	480	189.72196824
6	11	444	169.24439796	6	11	480	190.05163480
7	0	444	169.52501027	7	0	480	190.38250860
7	1	444	169.80659323	7	1	480	190.71459660
7	2	444	170.08915206	7	2	480	191.04790582
7	3	444	170.37269205	7	3	480	191.38244334
7	4	444	170.65721852	7	4	480	191.71821627
7	5	444	170.94273683	7	5	480	192.05523181
7	6	444	171.22925237	7	6	480	192.39349720
7	7	444	171.51677058	7	7	480	192.73301975
7	8	444	171.80529695	7	8	480	193.07380681
7	9	444	172.09483699	7	9	480	193.41586582
7	10	444	172.38539626	7	10	480	193.75920425
7	11	444	172.67698038	7	11	480	194.10382965
8	0	444	172.96959500	8	0	480	194.44974962
8	1	444	173.26324579	8	1	480	194.79697184
8	2	444	173.55793850	8	2	480	195.14550405
8	3	444	173.85367891	8	3	480	195.49535402
8	4	444	174.15047283	8	4	480	195.84652964
8	5	444	174.44832614	8	5	480	196.19903882
8	6	444	174.74724475	8	6	480	196.55288956
8	7	444	175.04723461	8	7	480	196.90808991
8	8	444	175.34830174	8	8	480	197.26464801
8	9	444	175.65045218	8	9	480	197.62257205
8	10	444	175.95369203	8	10	480	197.98187030
8	11	444	176.25802744	8	11	480	198.34255108
9	0	444	176.56346460	9	0	480	198.70462281
9	1	444	176.87000975	9	1	480	199.06809396
9	2	444	177.17766919	9	2	480	199.43297308

9	3	444	177.48644925	9	3	480	199.79926879
9	4	444	177.79635633	9	4	480	200.16698978
9	5	444	178.10739687	9	5	480	200.53614482
9	6	444	178.41957736	9	6	480	200.90674277
9	7	444	178.73290434	9	7	480	201.27879253
9	8	444	179.04738442	9	8	480	201.65230311
9	9	444	179.36302423	9	9	480	202.02728358
9	10	444	179.67983048	9	10	480	202.40374309
9	11	444	179.99780992	9	11	480	202.78169089
10	0	444	180.31696937	10	0	480	203.16113628
10	1	444	180.63731569	10	1	480	203.54208866
10	2	444	180.95885580	10	2	480	203.92455751
10	3	444	181.28159668	10	3	480	204.30855239
10	4	444	181.60554535	10	4	480	204.69408295
10	5	444	181.93070891	10	5	480	205.08115891
10	6	444	182.25709450	10	6	480	205.46979010
10	7	444	182.58470933	10	7	480	205.85998642
10	8	444	182.91356067	10	8	480	206.25175785
10	9	444	183.24365583	10	9	480	206.64511450
10	10	444	183.57500220	10	10	480	207.04006652
10	11	444	183.90760723	10	11	480	207.43662418
11	0	444	184.24147843	11	0	480	207.83479783
11	1	444	184.57662336	11	1	480	208.23459793
11	2	444	184.91304965	11	2	480	208.63603502
11	3	444	185.25076500	11	3	480	209.03911974
11	4	444	185.58977717	11	4	480	209.44386282
11	5	444	185.93009398	11	5	480	209.85027510
11	6	444	186.27172332	11	6	480	210.25836752
11	7	444	186.61467315	11	7	480	210.66815110

11	8	444	186.95895150	11	8	480	211.07963699
11	9	444	187.30456644	11	9	480	211.49283641
11	10	444	187.65152615	11	10	480	211.90776072
11	11	444	187.99983885	11	11	480	212.32442136
12	0	444	188.34951283	12	0	480	212.74282988
12	1	444	188.70055648	12	1	480	213.16299795
12	2	444	189.05297822	12	2	480	213.58493733
12	3	444	189.40678657	12	3	480	214.00865991
12	4	444	189.76199012	12	4	480	214.43417768
12	5	444	190.11859753	12	5	480	214.86150275
12	6	444	190.47661754	12	6	480	215.29064733
12	7	444	190.83605895	12	7	480	215.72162376
12	8	444	191.19693065	12	8	480	216.15444449
12	9	444	191.55924160	12	9	480	216.58912211
12	10	444	191.92300086	12	10	480	217.02566929
12	11	444	192.28821754	12	11	480	217.46409886
13	0	444	192.65490083	13	0	480	217.90442375
13	1	444	193.02306004	13	1	480	218.34665703
13	2	444	193.39270451	13	2	480	218.79081188
13	3	444	193.76384370	13	3	480	219.23690163
13	4	444	194.13648714	13	4	480	219.68493971
13	5	444	194.51064445	13	5	480	220.13493971
13	6	444	194.88632531	13	6	480	200.58691534
13	7	444	195.26353954	13	7	480	221.04088044
13	8	444	195.64229699	13	8	480	221.49684900
13	9	444	196.02260763	13	9	480	221.95483513
13	10	444	196.40448152	13	10	480	221.41485310
13	11	444	196.78792881	13	11	480	222.87691731
14	0	444	197.17295972	14	0	480	223.34104230

14	1	444	197.55958459	14	1	480	223.80724277
14	2	444	197.94781384	14	2	480	224.27553355
14	3	444	198.33765799	14	3	480	224.74592963
14	4	444	198.72912765	14	4	480	225.21844615
14	5	444	199.12223354	14	5	480	225.69309840
14	6	444	199.51698647	14	6	480	226.16990183
14	7	444	199.91339734	14	7	480	226.64887204
14	8	444	200.31147718	14	8	480	227.13002480
14	9	444	200.71123708	14	9	480	227.61337604
14	10	444	201.11268827	14	10	480	228.09894184
14	11	444	201.51584207	14	11	480	228.58673845
15	0	444	201.92070991	15	0	480	229.07678231
15	1	444	202.32730332	15	1	480	229.56909000
15	2	444	202.73563394	15	2	480	230.06367830
15	3	444	203.14571352	15	3	480	230.56056413
15	4	444	203.55755393	15	4	480	231.05976463
15	5	444	203.97116715	15	5	480	231.56129709
15	6	444	204.38656526	15	6	480	232.06517899
15	7	444	204.80376046	15	7	480	232.57142801
15	8	444	205.22276509	15	8	480	233.08006198
15	9	444	205.64359158	15	9	480	233.59109896
15	10	444	206.06625249	15	10	480	234.10455718
15	11	444	206.49076050	15	11	480	234.62045508
16	0	444	206.91712841	16	0	480	235.13881127
16	1	444	207.34536915	16	1	480	235.65964461
16	2	444	207.77549577	16	2	480	236.18297411
16	3	444	208.20752146	16	3	480	236.70881902
16	4	444	208.64145952	16	4	480	237.23719879
16	5	444	209.07732339	16	5	480	237.76813309

16	6	444	209.51512665	16	6	480	238.30164179
16	7	444	209.95488301	16	7	480	238.83774499
16	8	444	210.39660629	16	8	480	239.37646301
16	9	444	210.84031049	16	9	480	239.91781639
16	10	444	211.28600972	16	10	480	240.46182591
16	11	444	211.73371823	16	11	480	241.00851258
17	0	444	212.18345045	17	0	480	241.55789762
17	1	444	212.63522090	17	1	480	242.11000252
17	2	444	213.08904428	17	2	480	242.66484900
17	3	444	213.54493544	17	3	480	243.22245902
17	4	444	214.00290937	17	4	480	243.78285480
17	5	444	214.46298122	17	5	480	244.34605880
17	6	444	214.92516627	17	6	480	244.91209376
17	7	444	215.38948000	17	7	480	245.48098264
17	8	444	215.85593801	17	8	480	246.05274872
17	9	444	216.32455608	17	9	480	246.62741549
17	10	444	216.79535014	17	10	480	247.20500675
17	11	444	217.26833631	17	11	480	247.78554658
18	0	444	217.74353086	18	0	480	248.36905930
18	1	444	218.22095021	18	1	480	248.95556957
18	2	444	218.70061099	18	2	480	249.54510229
18	3	444	219.18252998	18	3	480	250.13768269
18	4	444	219.66672415	18	4	480	250.73333628
18	5	444	220.15321064	18	5	480	251.33208888
18	6	444	220.64200677	18	6	480	251.93396661
18	7	444	221.13313005	18	7	480	252.53899592
18	8	444	221.62659817	18	8	480	253.14720355
18	9	444	222.12242902	18	9	480	253.75861660
18	10	444	222.62064068	18	10	480	254.37326245

18	11	444	223.12125141	18	11	480	254.99116887
19	0	444	223.62427968	19	0	480	255.61236391
19	1	444	224.12974416	19	1	480	256.23687601
19	2	444	224.63766372	19	2	480	256.86473394
19	3	444	225.14805744	19	3	480	257.49596681
19	4	444	225.66094459	19	4	480	258.13060413
19	5	444	226.17634468	19	5	480	258.76867574
19	6	444	226.69427743	19	6	480	259.41021186
19	7	444	227.21476274	19	7	480	260.05524310
19	8	444	227.73782079	19	8	480	260.70380046
19	9	444	228.26347193	19	9	480	261.35591530
19	10	444	228.79173678	19	10	480	262.01161941
19	11	444	229.32263616	19	11	480	262.67094498
20	0	444	229.85619114	20	0	480	263.33392459
20	1	444	230.39242302	20	1	479	263.00059126
20	2	444	230.93135335	20	2	478	262.66679431
20	3	444	231.47300392	20	3	477	262.33253248
20	4	444	232.01739677	20	4	476	261.99780444
20	5	444	232.56455418	20	5	475	261.66260891
20	6	444	233.11449870	20	6	474	261.32694458
20	7	444	233.66725314	20	7	473	260.99081012
20	8	444	234.22284055	20	8	472	260.65420423
20	9	444	234.78128429	20	9	471	260.31712558
20	10	444	235.34260795	20	10	470	259.97957284
20	11	444	235.90683542	20	11	469	259.64154467
21	0	444	236.47399086	21	0	468	259.30303973
21	1	444	237.04409872	21	1	467	258.96405668
21	2	444	237.61718373	21	2	466	258.62459416
21	3	444	238.19327092	21	3	465	258.28465082



원형Y 플랫폼 간판 제설작업 후 이 플랫폼에 간판 설치 예정

21	4	444	238.77238562	21	4	464	257.94422529
21	5	444	239.35455345	21	5	463	257.60331620
21	6	444	239.93980036	21	6	462	257.26192217
21	7	444	240.52815257	21	7	461	256.92004183
21	8	444	241.11963667	21	8	460	256.57767379
21	9	444	241.71427952	21	9	459	256.23481664
21	10	444	242.31210835	21	10	458	255.89146900
21	11	444	242.91315070	21	11	457	255.54762946
22	0	444	243.51743445	22	0	456	255.20329661
22	1	444	244.12498781	22	1	455	254.85846902
22	2	444	244.73583937	22	2	454	254.51314528
22	3	444	245.35001805	22	3	453	254.16732395
22	4	444	245.96755312	22	4	452	253.82100361
22	5	444	246.58847425	22	5	451	253.47418280
22	6	444	247.21281145	22	6	450	253.12686008
22	7	444	247.84059512	22	7	449	252.77903399
22	8	444	248.47185604	22	8	448	252.43070308
22	9	444	249.10662539	22	9	447	252.08186587
22	10	444	249.74493473	22	10	446	251.73252089
22	11	444	250.38681604	22	11	445	251.38266666
23	0	444	251.03230170	23	0	444	251.03230170
23	1	443	250.68142450	23	1	443	250.68142450
23	2	442	250.33003358	23	2	442	250.33003358
23	3	441	249.97812742	23	3	441	249.97812742
23	4	440	249.62570452	23	4	440	249.62570452
23	5	439	249.27276334	23	5	439	249.27276334
23	6	438	248.91930237	23	6	438	248.91930237
23	7	437	248.56532007	23	7	437	248.56532007
23	8	436	248.21081490	23	8	436	248.21081490

23	9	435	247.85578531	23	9	435	247.85578531
23	10	434	247.50022976	23	10	434	247.50022976
23	11	433	247.14414667	23	11	433	247.14414667
24	0	432	246.78753449	24	0	432	246.78753449
24	1	431	246.43039163	24	1	431	246.43039163
24	2	430	246.07271652	24	2	430	246.07271652
24	3	429	245.71450756	24	3	429	245.71450756
24	4	428	245.35576317	24	4	428	245.35576317
24	5	427	244.99648173	24	5	427	244.99648173
24	6	426	244.63666164	24	6	426	244.63666164
24	7	425	244.27630128	24	7	425	244.27630128
24	8	424	243.91539902	24	8	424	243.91539902
24	9	423	243.55395324	24	9	423	243.55395324
24	10	422	243.19196229	24	10	422	243.19196229
24	11	421	242.82942453	24	11	421	242.82942453
25	0	420	242.46633829	25	0	420	242.46633829
25	1	419	242.10270193	25	1	419	242.10270193
25	2	418	241.73851377	25	2	418	241.73851377
25	3	417	241.37377212	25	3	417	241.37377212
25	4	416	241.00847532	25	4	416	241.00847532
25	5	415	240.64262166	25	5	415	240.64262166
25	6	414	240.27620945	25	6	414	240.27620945
25	7	413	239.90923697	25	7	413	239.90923697
25	8	412	239.54170251	25	8	412	239.54170251
25	9	411	239.17360435	25	9	411	239.17360435
25	10	410	238.80494076	25	10	410	238.80494076
25	11	409	238.43570999	25	11	409	238.43570999
26	0	408	238.06591030	26	0	408	238.06591030
26	1	407	237.69553993	26	1	407	237.69553993

26	2	406	237.32459712	26	2	406	237.32459712
26	3	405	236.95308009	26	3	405	236.95308009
26	4	404	236.58098706	26	4	404	236.58098706
26	5	403	236.20831626	26	5	403	236.20831626
26	6	402	235.83506587	26	6	402	235.83506587
26	7	401	235.46123409	26	7	401	235.46123409
26	8	400	235.08681912	26	8	400	235.08681912
26	9	399	234.71181912	26	9	399	234.71181912
26	10	398	234.33623226	26	10	398	234.33623226
26	11	397	233.96005671	26	11	397	233.96005671
27	0	396	233.58329062	27	0	396	233.58329062
27	1	395	233.20593213	27	1	395	233.20593213
27	2	394	232.82797938	27	2	394	232.82797938
27	3	393	232.44943048	27	3	393	232.44943048
27	4	392	232.07028356	27	4	392	232.07028356
27	5	391	231.69053672	27	5	391	231.69053672
27	6	390	231.31018807	27	6	390	231.31018807
27	7	389	230.92923569	27	7	389	230.92923569
27	8	388	230.54767766	27	8	388	230.54767766
27	9	387	230.16551206	27	9	387	230.16551206
27	10	386	229.78273694	27	10	386	229.78273694
27	11	385	229.39935036	27	11	385	229.39935036
28	0	384	229.01535036	28	0	384	229.01535036
28	1	383	228.63073497	28	1	383	228.63073497
28	2	382	228.24550223	28	2	382	228.24550223
28	3	381	227.85965014	28	3	381	227.85965014
28	4	380	227.47317671	28	4	380	227.47317671
28	5	379	227.08607993	28	5	379	227.08607993
28	6	378	226.69835780	28	6	378	226.69835780

28	7	377	226.31000829	28	7	377	226.31000829
28	8	376	225.92102936	28	8	376	225.92102936
28	9	375	225.53141897	28	9	375	225.53141897
28	10	374	225.14117506	28	10	374	225.14117506
28	11	373	224.75029558	28	11	373	224.75029558
29	0	372	224.35877846	29	0	372	224.35877846
29	1	371	223.96662159	29	1	371	223.96662159
29	2	370	223.57382290	29	2	370	223.57382290
29	3	369	223.18038028	29	3	369	223.18038028
29	4	368	222.78629161	29	4	368	222.78629161
29	5	367	222.39155477	29	5	367	222.39155477
29	6	366	221.99616762	29	6	366	221.99616762
29	7	365	221.60012801	29	7	365	221.60012801
29	8	364	221.20343380	29	8	364	221.20343380
29	9	363	220.80608281	29	9	363	220.80608281
29	10	362	220.40807285	29	10	362	220.40807285
29	11	361	220.00940176	29	11	361	220.00940176
30	0	360	219.61006732	30	0	360	219.61006732
30	1	359	219.21006732	30	1	359	219.21006732
30	2	358	218.80939954	30	2	358	218.80939954
30	3	357	218.40806174	30	3	357	218.40806174
30	4	356	218.00605169	30	4	356	218.00605169
30	5	355	217.60336713	30	5	355	217.60336713
30	6	354	217.20000579	30	6	354	217.20000579
30	7	353	216.79596538	30	7	353	216.79596538
30	8	352	216.39124363	30	8	352	216.39124363
30	9	351	215.98583822	30	9	351	215.98583822
30	10	350	215.57974685	30	10	350	215.57974685
30	11	349	215.17296719	30	11	349	215.17296719

31	0	348	214.76549690	31	0	348	214.76549690
31	1	347	214.35733364	31	1	347	214.35733364
31	2	346	213.94847503	31	2	346	213.94847503
31	3	345	213.53891872	31	3	345	213.53891872
31	4	344	213.12866231	31	4	344	213.12866231
31	5	343	212.71770340	31	5	343	212.71770340
31	6	342	212.30603960	31	6	342	212.30603960
31	7	341	211.89366846	31	7	341	211.89366846
31	8	340	211.48058757	31	8	340	211.48058757
31	9	339	211.06679446	31	9	339	211.06679446
31	10	338	210.65228669	31	10	338	210.65228669
31	11	337	210.23706178	31	11	337	210.23706178
32	0	336	209.82111724	32	0	336	209.82111724
32	1	335	209.40445057	32	1	335	209.40445057
32	2	334	208.98705927	32	2	334	208.98705927
32	3	333	208.56894080	32	3	333	208.56894080
32	4	332	208.15009263	32	4	332	208.15009263
32	5	331	207.73051221	32	5	331	207.73051221
32	6	330	207.31019698	32	6	330	207.31019698
32	7	329	206.88914435	32	7	329	206.88914435
32	8	328	206.46735173	32	8	328	206.46735173
32	9	327	206.04481652	32	9	327	206.04481652
32	10	326	205.62153609	32	10	326	205.62153609
32	11	325	205.19750782	32	11	325	205.19750782
33	0	324	204.77272906	33	0	324	204.77272906
33	1	323	204.34719715	33	1	323	204.34719715
33	2	322	203.92090940	33	2	322	203.92090940
33	3	321	203.49386314	33	3	321	203.49386314
33	4	320	203.06605565	33	4	320	203.06605565

33	5	319	202.63748422	33	5	319	202.63748422
33	6	318	202.20814612	33	6	318	202.20814612
33	7	317	201.77803859	33	7	317	201.77803859
33	8	316	201.34715888	33	8	316	201.34715888
33	9	315	200.91550421	33	9	315	200.91550421
33	10	314	200.48307177	33	10	314	200.48307177
33	11	313	200.04985878	33	11	313	200.04985878
34	0	312	199.61586239	34	0	312	199.61586239
34	1	311	199.18107978	34	1	311	199.18107978
34	2	310	198.74550810	34	2	310	198.74550810
34	3	309	198.30914446	34	3	309	198.30914446
34	4	308	197.87198599	34	4	308	197.87198599
34	5	307	197.43402979	34	5	307	197.43402979
34	6	306	196.99527293	34	6	306	196.99527293
34	7	305	196.55571249	34	7	305	196.55571249
34	8	304	196.11534552	34	8	304	196.11534552
34	9	303	195.67416905	34	9	303	195.67416905
34	10	302	195.23218010	34	10	302	195.23218010
34	11	301	194.78937567	34	11	301	194.78937567
35	0	300	194.34575275	35	0	300	194.34575275
35	1	299	193.90130830	35	1	299	193.90130830
35	2	298	193.45603929	35	2	298	193.45603929
35	3	297	193.00994263	35	3	297	193.00994263
35	4	296	192.56301526	35	4	296	192.56301526
35	5	295	192.11525406	35	5	295	192.11525406
35	6	294	191.66665593	35	6	294	191.66665593
35	7	293	191.21721773	35	7	293	191.21721773
35	8	292	190.76693631	35	8	292	190.76693631
35	9	291	190.31580849	35	9	291	190.31580849

3

근년전면한 학습 체계 이후 남북평화회담 후 3개월간 전면한 학습 시행

35	10	290	189.86383109	35	10	290	189.86383109
35	11	289	189.41100090	35	11	289	189.41100090
36	0	288	188.95731470	36	0	288	188.95731470
36	1	287	188.50276924	36	1	287	188.50276924
36	2	286	188.04736127	36	2	286	188.04736127
36	3	285	187.59108751	36	3	285	187.59108751
36	4	284	187.13394465	36	4	284	187.13394465
36	5	283	186.67592938	36	5	283	186.67592938
36	6	282	186.21703837	36	6	282	186.21703837
36	7	281	185.75726826	36	7	281	185.75726826
36	8	280	185.29661566	36	8	280	185.29661566
36	9	279	184.83507720	36	9	279	184.83507720
36	10	278	184.37264946	36	10	278	184.37264946
36	11	277	183.90932899	36	11	277	183.90932899
37	0	276	183.44511236	37	0	276	183.44511236
37	1	275	182.97999608	37	1	275	182.97999608
37	2	274	182.51397666	37	2	274	182.51397666
37	3	273	182.04705059	37	3	273	182.04705059
37	4	272	181.57921434	37	4	272	181.57921434
37	5	271	181.11046434	37	5	271	181.11046434
37	6	270	180.64079702	37	6	270	180.64079702
37	7	269	180.17020878	37	7	269	180.17020878
37	8	268	179.69869601	37	8	268	179.69869601
37	9	267	179.22625507	37	9	267	179.22625507
37	10	266	178.75288228	37	10	266	178.75288228
37	11	265	178.27857398	37	11	265	178.27857398
38	0	264	177.80332646	38	0	264	177.80332646
38	1	263	177.32713598	38	1	263	177.32713598
38	2	262	176.84999881	38	2	262	176.84999881

38	3	261	176.37191116	38	3	261	176.37191116
38	4	260	175.89286924	38	4	260	175.89286924
38	5	259	175.41286924	38	5	259	175.41286924
38	6	258	174.93190732	38	6	258	174.93190732
38	7	257	174.44997961	38	7	257	174.44997961
38	8	256	173.96708222	38	8	256	173.96708222
38	9	255	173.48321125	38	9	255	173.48321125
38	10	254	172.99836277	38	10	254	172.99836277
38	11	253	172.51253281	38	11	253	172.51253281
39	0	252	172.02571739	39	0	252	172.02571739
39	1	251	171.53791252	39	1	251	171.53791252
39	2	250	171.04911415	39	2	250	171.04911415
39	3	249	170.55931823	39	3	249	170.55931823
39	4	248	170.06852068	39	4	248	170.06852068
39	5	247	169.57671740	39	5	247	169.57671740
39	6	246	169.08390426	39	6	246	169.08390426
39	7	245	168.59007710	39	7	245	168.59007710
39	8	244	168.09523174	39	8	244	168.09523174
39	9	243	167.59936397	39	9	243	167.59936397
39	10	242	167.10246956	39	10	242	167.10246956
39	11	241	166.60454425	39	11	241	166.60454425
40	0	240	166.10558375	40	0	240	166.10558375
40	1	239	165.60558375	40	1	239	165.60558375
40	2	238	165.10453991	40	2	238	165.10453991
40	3	237	164.60244786	40	3	237	164.60244786
40	4	236	164.09930320	40	4	236	164.09930320
40	5	235	163.59510152	40	5	235	163.59510152
40	6	234	163.08983837	40	6	234	163.08983837
40	7	233	162.58350925	40	7	233	162.58350925

3
국시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8	232	162.07610968	40	8	232	162.07610968
40	9	231	161.56763510	40	9	231	161.56763510
40	10	230	161.05808096	40	10	230	161.05808096
40	11	229	160.54744266	40	11	229	160.54744266
41	0	228	160.03571558	41	0	228	160.03571558
41	1	227	159.52289507	41	1	227	159.52289507
41	2	226	159.00897644	41	2	226	159.00897644
41	3	225	158.49395498	41	3	225	158.49395498
41	4	224	157.97782595	41	4	224	157.97782595
41	5	223	157.46058457	41	5	223	157.46058457
41	6	222	156.94222604	41	6	222	156.94222604
41	7	221	156.42274552	41	7	221	156.42274552
41	8	220	155.90213814	41	8	220	155.90213814
41	9	219	155.38039901	41	9	219	155.38039901
41	10	218	154.85752320	41	10	218	154.85752320
41	11	217	154.33350573	41	11	217	154.33350573
42	0	216	153.80834161	42	0	216	153.80834161
42	1	215	153.28202582	42	1	215	153.28202582
42	2	214	152.75455330	42	2	214	152.75455330
42	3	213	152.22591894	42	3	213	152.22591894
42	4	212	151.69611761	42	4	212	151.69611761
42	5	211	151.16514416	42	5	211	151.16514416
42	6	210	150.63299338	42	6	210	150.63299338
42	7	209	150.09966005	42	7	209	150.09966005
42	8	208	149.56513889	42	8	208	149.56513889
42	9	207	149.02942461	42	9	207	149.02942461
42	10	206	148.49251186	42	10	206	148.49251186
42	11	205	147.95439526	42	11	205	147.95439526
43	0	204	147.41506942	43	0	204	147.41506942

43	1	203	146.87452888	43	1	203	146.87452888
43	2	202	146.33276816	43	2	202	146.33276816
43	3	201	145.78978173	43	3	201	145.78978173
43	4	200	145.24556405	43	4	200	145.24556405
43	5	199	144.70010950	43	5	199	144.70010950
43	6	198	144.15341246	43	6	198	144.15341246
43	7	197	143.60546726	43	7	197	143.60546726
43	8	196	143.05626817	43	8	196	143.05626817
43	9	195	142.50580946	43	9	195	142.50580946
43	10	194	141.95408532	43	10	194	141.95408532
43	11	193	141.40108993	43	11	193	141.40108993
44	0	192	140.84681741	44	0	192	140.84681741
44	1	191	140.29126185	44	1	191	140.29126185
44	2	190	139.73441731	44	2	190	139.73441731
44	3	189	139.17627777	44	3	189	139.17627777
44	4	188	138.61683721	44	4	188	138.61683721
44	5	187	138.05608955	44	5	187	138.05608955
44	6	186	137.49402866	44	6	186	137.49402866
44	7	185	136.93064838	44	7	185	136.93064838
44	8	184	136.36594249	44	8	184	136.36594249
44	9	183	135.79990476	44	9	183	135.79990476
44	10	182	135.23252887	44	10	182	135.23252887
44	11	181	134.66380849	44	11	181	134.66380849
45	0	180	134.09373723	45	0	180	134.09373723
45	1	179	133.52230866	45	1	179	133.52230866
45	2	178	132.94951630	45	2	178	132.94951630
45	3	177	132.37535362	45	3	177	132.37535362
45	4	176	131.79981405	45	4	176	131.79981405
45	5	175	131.22289097	45	5	175	131.22289097

45	6	174	130.64457772	45	6	174	130.64457772
45	7	173	130.06486758	45	7	173	130.06486758
45	8	172	129.48375377	45	8	172	129.48375377
45	9	171	128.90122950	45	9	171	128.90122950
45	10	170	128.31728790	45	10	170	128.31728790
45	11	169	127.73192204	45	11	169	127.73192204
46	0	168	127.14512498	46	0	168	127.14512498
46	1	167	126.55688968	46	1	167	126.55688968
46	2	166	125.96720909	46	2	166	125.96720909
46	3	165	125.37607609	46	3	165	125.37607609
46	4	164	124.78348350	46	4	164	124.78348350
46	5	163	124.18942409	46	5	163	124.18942409
46	6	162	123.59389059	46	6	162	123.59389059
46	7	161	122.99687567	46	7	161	122.99687567
46	8	160	122.39837193	46	8	160	122.39837193
46	9	159	121.79837193	46	9	159	121.79837193
46	10	158	121.19686817	46	10	158	121.19686817
46	11	157	120.59385309	46	11	157	120.59385309
47	0	156	119.98931909	47	0	156	119.98931909
47	1	155	119.38325848	47	1	155	119.38325848
47	2	154	118.77566354	47	2	154	118.77566354
47	3	153	118.16652649	47	3	153	118.16652649
47	4	152	117.55583946	47	4	152	117.55583946
47	5	151	116.94359457	47	5	151	116.94359457
47	6	150	116.32978382	47	6	150	116.32978382
47	7	149	115.71439921	47	7	149	115.71439921
47	8	148	115.09743263	47	8	148	115.09743263
47	9	147	114.47887593	47	9	147	114.47887593
47	10	146	113.85872089	47	10	146	113.85872089

47	11	145	113.23695923	47	11	145	113.23695923
48	0	144	112.61358261	48	0	144	112.61358261
48	1	143	111.98858261	48	1	143	111.98858261
48	2	142	111.36195075	48	2	142	111.36195075
48	3	141	110.73367850	48	3	141	110.73367850
48	4	140	110.10375724	48	4	140	110.10375724
48	5	139	109.47217829	48	5	139	109.47217829
48	6	138	108.83893291	48	6	138	108.83893291
48	7	137	108.20401228	48	7	137	108.20401228
48	8	136	107.56740750	48	8	136	107.56740750
48	9	135	106.92910963	48	9	135	106.92910963
48	10	134	106.28910963	48	10	134	106.28910963
48	11	133	105.64739840	48	11	133	105.64739840
49	0	132	105.00396676	49	0	132	105.00396676
49	1	131	104.35880547	49	1	131	104.35880547
49	2	130	103.71190521	49	2	130	103.71190521
49	3	129	103.06325656	49	3	129	103.06325656
49	4	128	102.41285005	49	4	128	102.41285005
49	5	127	101.76067614	49	5	127	101.76067614
49	6	126	101.10672519	49	6	126	101.10672519
49	7	125	100.45098748	49	7	125	100.45098748
49	8	124	99.79345323	49	8	124	99.79345323
49	9	123	99.13411257	49	9	123	99.13411257
49	10	122	98.47295555	49	10	122	98.47295555
49	11	121	97.80997212	49	11	121	97.80997212
50	0	120	97.14515218	50	0	120	97.14515218
50	1	119	96.47848551	50	1	119	96.47848551
50	2	118	95.80996184	50	2	118	95.80996184
50	3	117	95.13957078	50	3	117	95.13957078

50	4	116	94.46730187	50	4	116	94.46730187
50	5	115	93.79314456	50	5	115	93.79314456
50	6	114	93.11708823	50	6	114	93.11708823
50	7	113	92.43912212	50	7	113	92.43912212
50	8	112	91.75923544	50	8	112	91.75923544
50	9	111	91.07741726	50	9	111	91.07741726
50	10	110	90.39365657	50	10	110	90.39365657
50	11	109	89.70794229	50	11	109	89.70794229
51	0	108	89.02026320	51	0	108	89.02026320
51	1	107	88.33060803	51	1	107	88.33060803
51	2	106	87.63896538	51	2	106	87.63896538
51	3	105	86.94532376	51	3	105	86.94532376
51	4	104	86.24967159	51	4	104	86.24967159
51	5	103	85.55199717	51	5	103	85.55199717
51	6	102	84.85228871	51	6	102	84.85228871
51	7	101	84.15053433	51	7	101	84.15053433
51	8	100	83.44672201	51	8	100	83.44672201
51	9	99	82.74083966	51	9	99	82.74083966
51	10	98	82.03287506	51	10	98	82.03287506
51	11	97	81.32281589	51	11	97	81.32281589
52	0	96	80.61064971	52	0	96	80.61064971
52	1	95	79.89636400	52	1	95	79.89636400
52	2	94	79.17994609	52	2	94	79.17994609
52	3	93	78.46138321	52	3	93	78.46138321
52	4	92	77.74066249	52	4	92	77.74066249
52	5	91	77.01777093	52	5	91	77.01777093
52	6	90	76.29269540	52	6	90	76.29269540
52	7	89	75.56542267	52	7	89	75.56542267
52	8	88	74.83593939	52	8	88	74.83593939

52	9	87	74.10423207	52	9	87	74.10423207
52	10	86	73.37028712	52	10	86	73.37028712
52	11	85	72.63409080	52	11	85	72.63409080
53	0	84	71.89562926	53	0	84	71.89562926
53	1	83	71.15488852	53	1	83	71.15488852
53	2	82	70.41185446	53	2	82	70.41185446
53	3	81	69.66651285	53	3	81	69.66651285
53	4	80	68.91884930	53	4	80	68.91884930
53	5	79	68.16884930	53	5	79	68.16884930
53	6	78	67.41649820	53	6	78	67.41649820
53	7	77	66.66178122	53	7	77	66.66178122
53	8	76	65.90468343	53	8	76	65.90468343
53	9	75	65.14518976	53	9	75	65.14518976
53	10	74	64.38328499	53	10	74	64.38328499
53	11	73	63.61895378	53	11	73	63.61895378
54	0	72	62.85218062	54	0	72	62.85218062
54	1	71	62.08294985	54	1	71	62.08294985
54	2	70	61.31124567	54	2	70	61.31124567
54	3	69	60.53705212	54	3	69	60.53705212
54	4	68	59.76035309	54	4	68	59.76035309
54	5	67	58.98113232	54	5	67	58.98113232
54	6	66	58.19937336	54	6	66	58.19937336
54	7	65	57.41505963	54	7	65	57.41505963
54	8	64	56.62817439	54	8	64	56.62817439
54	9	63	55.83870070	54	9	63	55.83870070
54	10	62	55.04662149	54	10	62	55.04662149
54	11	61	54.25191951	54	11	61	54.25191951
55	0	60	53.45457732	55	0	60	53.45457732
55	1	59	52.65457732	55	1	59	52.65457732

55	2	58	51.85190173	55	2	58	51.85190173
55	3	57	51.04653260	55	3	57	51.04653260
55	4	56	50.23845179	55	4	56	50.23845179
55	5	55	49.42764098	55	5	55	49.42764098
55	6	54	48.61408166	55	6	54	48.61408166
55	7	53	47.79775513	55	7	53	47.79775513
55	8	52	46.97864250	55	8	52	46.97864250
55	9	51	46.15672469	55	9	51	46.15672469
55	10	50	45.33198243	55	10	50	45.33198243
55	11	49	44.50439622	55	11	49	44.50439622
56 이 상		48	43.67394639	56 이 상		48	43.67394639

[별표 2]

정착금 중 기본금의 감액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감액 기준
1. 남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1/2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1/3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1/4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항	부과 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가. 고의인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00만원 100만원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고의인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만원 100만원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및 연락처	() - - - -			
납북자 개요	①	납북자 성명		납북일자	년 월 일 시경
		생년월일		납북장소	
	② 가족관계				
	③ 당시직업				
	④ 상세납북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⑤ 상세귀환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⑥ 대리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 -	
<p>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p> <p>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착금의 우선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리인 (인)</p>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뒷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첨 부 서 류	1. 대리신청 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서 제출 시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정착금·주거지원금 등 수령 위임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란에는 납북당시 상황 및 일자를 개괄적으로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납북자가 납북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관계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납북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④란 및 ⑤란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합니다. 5. ⑥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서 제출 시에 기재합니다.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처리기간
					180 일
신청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및연락처				
납북자개요	① 개요	납북일자	년 월 일	시경	
		납북장소			
	② 당시부양가족				
	③ 당시직업				
	④ 상세납북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⑤ 상세귀환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⑥ 대리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p>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p> <p>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리인 (인)</p>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뒷 면)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및 귀환 경위 상세 설명서 2. 대리신청 위임장(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서 제출 시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정착금·주거지원금 등 수령 위 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작 성 요 령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란에는 납북당시 상황 및 일자를 개괄적으로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납북자가 납북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납북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④란 및 ⑤란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합니다. 5. ⑥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서 제출 시에 기재합니다. 			

(뒷 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첨 부 서 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경위 상세설 명서 1부 2.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납북자가 근 로소득자였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납북자가 사업소득자였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납북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란에는 납북당시 상황 및 일자를 개괄적으로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납북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납북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④란은 납북자의 상세한 납북경위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합니다. 5.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는 대표자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나머지 신청인을 기재합니다.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처리기간
							180일
납북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주소						
신청사유	상이일자	19년	월	일	당시나이	세	①당시직업
	②상이내용				③조사기관		
	④당시월수입		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 기간		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		
	⑦향후치료		치료내용:		추정치료비:		
	⑧간호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⑨보장구		보장구명:		시가: 내구연수:		
상이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⑩신청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납북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p>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p> <p>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input type="checkbox"/>향후 치료비, <input type="checkbox"/>간호비, <input type="checkbox"/>보장구 구입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p> <p>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뒷 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첨 부 서 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이경위 상세설명서 1부 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 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납북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납북자가 사업소득 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향후 치료비·간호비·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의 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 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 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납북자의 가족관계 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요령】</p> 1. ①란에는 납북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④란에는 상이직전 3개월 월수입액의 평균 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다리·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와 골절상·자상(刺傷) 등 구체적 병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당시 조사하거나 상이를 입힌 국가기관을 기재합니다. 4. ⑤,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기재합니다. 5. ⑦란에는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내용과 추정치료비를 의사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6. ⑧란에는 간호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호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기재합니 다. 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합니다. 9. 신청서 하단의 □란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한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처리기간
				180일
납북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주소			
신청사유	사망 일자	년 월 일		
	당시 나이		① 당시 부양가족	
	② 당시직업		③ 당시 월수입	
	④ 조사기관 및 주요 피해 내용			
사망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⑤ 신청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납북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 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div>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뒷 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첨 부 서 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경위 상세설명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납북자가 근로소득자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 (납북자가 사업소 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 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1부 2. 납북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1부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란에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가족의 성명의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사망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③란에는 사망 직전 3개월간의 월수입액의 평균을 기재합니다. 3. ④란에는 당시 조사하거나 상이 또는 사망 피해를 입힌 국가기관을 기재하고 주요 피해내용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납북 <input type="checkbox"/> 귀환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일시	
장소(가판)	
납북, 귀환, 상이 또는 사망 경위	
입증방법 및 서류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99

국민안전처에 관한 법령 적용 범위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6>

(앞 면)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 족 대 표 자	성 명(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남북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 -
<p>본인들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피해위로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p> <p>년 월 일</p>				
위 임 자				
1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대 표 자 와 의 관 계	의
2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대 표 자 와 의 관 계	의
3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대 표 자 와 의 관 계	의
4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대 표 자 와 의 관 계	의
5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대 표 자 와 의 관 계	의
※ 구비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유족대표자 선정 방법]

1. 유족 중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있어서 같은 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해위로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3
 간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				
수 입 자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 -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위 사람에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피해위로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위 임 자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주 소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확 인 서</p> <p style="margin-top: 10px;">상기 위임자는 <input type="checkbox"/> 입 원 <input type="checkbox"/> 교도소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 타()</p> <p style="margin-top: 10px;">중에 있음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확인기관의 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0px;">직인</div> </div>				

(뒷면)

피해위로금 등 내 역	피해위로금	
	정 착 금	
	주거지원금	
	보 상 금	
	의료지원금	
	합 계	
	감 액	
	총 액	
결 정 이 유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지급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남보위 결정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지급결정서와 같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이하 "신분증사본"이라 한다) 1부(용도: 피해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신분증사본 각 1부

3) 대리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400원 수입인지 첨부),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지급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인]

※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애진단서

병록번호 _____

연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동반자 _____

환 자 의 주 소		
환 자 의 성 명		
병 명	국 제 질 병 분 류 번 호 에 의 함	1. 2. 3. 4.
장 해 부 위		
장 해 정 도 또는 현 증 상		
병 력 및 진 료 경 과 의 건		
향 후 치 료 에 대 한 의 건	향 후 치 료 의 건	
	치 료 를 요 하 는 기 간	주
그 밖 의 사 항		※ 참고자료 별첨 부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발행일 년 월 일 </div>		
병원소재지 전화번호 병원명 병원장 [인] 면허번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3

신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26>

동의 및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5일
<p>1. 신청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p> <p>2. 신청인은 그 지급결정액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p> <p>3. 신청인은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p>					
접수번호	납보위	결정	제 호	결정일자	
결정주문					
납북 피해자	성 명(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인 (2명 이상은 별지에 작성)	성 명(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납북피해자 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수수료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없 음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n²(재활용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9.26]

[법률 제9519호, 2009. 3.25, 제정]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 조 (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 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 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교류경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부칙 <제9519호, 2009. 3.2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 9.24, 제정]

제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수 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 조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 4 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산가족찾기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 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체재료 및 증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부칙 <제21745호, 2009. 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호서식]

(앞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성 명	(한자)	별명 또는 아명(兒名)		사진 (3.5 × 4.5 cm) *여권용 또는 반명함		
주민등록번호		실제 출생일				
출 신 지 (고향)		본 관				
현 주 소	(우편번호 -)					
연락처	자택 ()	핸드폰				
	직장 ()	이메일				
신청인의 주요 특징 ※ 헤어질 때 기준					혈액형	
신청인의 아버지	성 명		신청인의 어머니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존 여부			생존 여부		
	사망일			사망일		
신청인의 (외)할아버지	성 명		신청인의 (외)할머니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존 여부			생존 여부		
	사망일			사망일		
남한의 가족사항 (성명·성별·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생존 여부 (사망연월일)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60g/n²)

(뒷면)

찾으려는 북한의 가족(1명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헤어질 당시 직업/학교	헤어질 당시 주소
1						
2						
3						
4						
5						
6						
7						
8						
9						

헤어진 시기

6·25 이전 6·25 당시 휴전 이후~1959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이산사유 구분

실향민 국군포로 납북자 월북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그 밖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하고, 위 내용을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현주소					
	출생지					
교류종류	<input type="checkbox"/> 생사확인 <input type="checkbox"/> 상봉 <input type="checkbox"/> 교류 지속(서신 교환 등)					
북한의 가족	성명	나이	성별	현거주지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여부
교류중개인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교류일자 및 장소						
교류방법						
최초 생사확인 시기			교류 지속기간			
기타 (해당하는 사람만 표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국군포로의 가족 <input type="checkbox"/> 남북자의 가족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일	
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레비		가족 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등)		
수령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덧붙임 확인)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뒷면)

신청인 제출 서류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30]

[법률 제7763호, 2005.12.29, 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원칙)** 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

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 6 조 (한반도 평화증진) 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 7 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 8 조 (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①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 (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

- 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 (지휘·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4 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7763호, 2005.12.29>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회 등

제 7 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10. 삭제 <2008.2.29>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 9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 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제16조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 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

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제 4 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제20조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법 제21조에 따라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 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21호, 2008. 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1.17]

[통일부령 제40호, 2006.11.17,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⑤ 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신임장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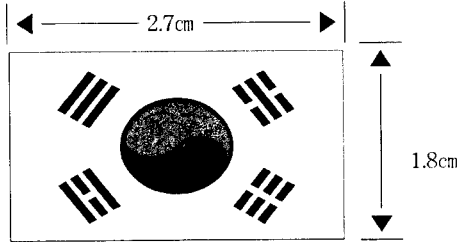
제 4 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40호, 200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및 수행원이 착용하는 표지(제2조제4항 관련)



(주)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제작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대통령

260mm×380mm(한지백색 170g/m²)



임명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통일부장관

240mm×340mm(한지백색 170g/m²)



[별지 제3호서식]

신 임 장

나는 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단(특별사절단)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리는 바입니다.

수석대표(수석특별사절) :

대 표(특별사절) :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통령 〇〇〇

260mm×380mm(한지백색 170g/m²)

신 임 장

나는 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단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리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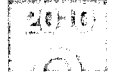
수석대표 :

대 표 :

년 월 일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〇〇〇

240mm×340mm(한지백색 170g/m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4 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 5 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 6 조 (협의회)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 7 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8 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9 조 (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횡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 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삭제 <2009.1.30>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 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③ 삭제 <2009.5.28>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 (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 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의2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

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 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4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본조신설 2009.1.30]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0228호, 2010. 4.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 9.24,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 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제 4 조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 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

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통일부장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 (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 (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폰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

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반입 유효기간
4. 반출·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협력사업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불정기)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 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1745호, 2009. 9.2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
5.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300만원 이하
7.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300만원 이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31]

[통일부령 제52호, 2009. 7.31, 전부개정]

-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3 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 6 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7 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 8 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 9 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

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

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2호, 2009. 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 3 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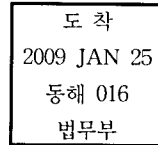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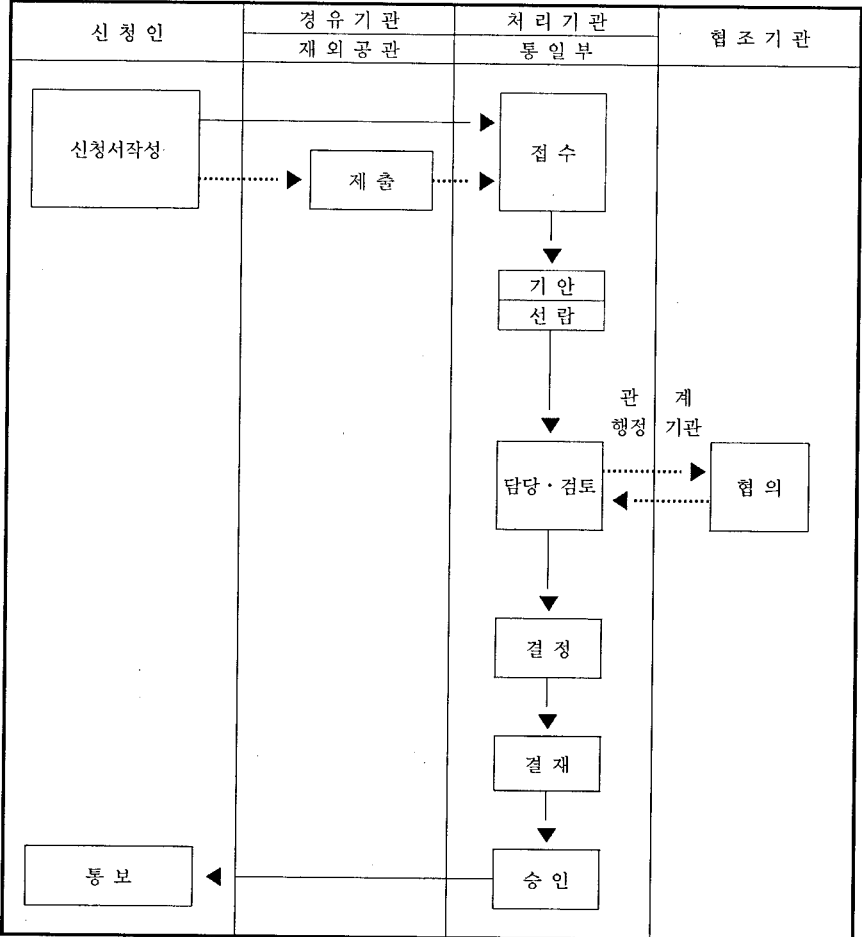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사 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방문 대상자 인사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문 예정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⑦ 방문 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방문 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사 진 3.5cm×4.5cm	
	주소·연락처						
	소속 및 직위						(전화:)
②방문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방문목적							
④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방문예정 지역 및 기간							
⑥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⑦방문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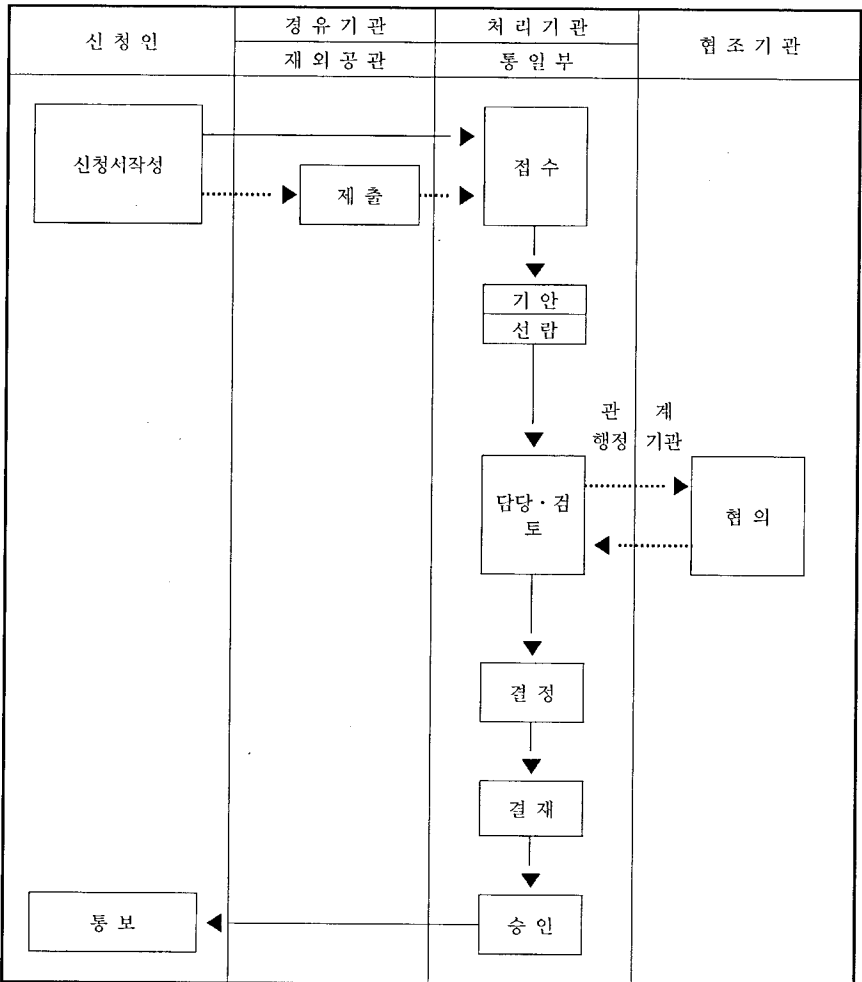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방문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신고인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사 진 (3.5cm×4.5cm)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재외국민)					
성 별					
주 소					
직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 대 폰				
신 장	cm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승인 번호		방문승인서
①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및 직 위	
② 방문 대상자	성 명	
	소 속 및 직 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지역 및 방문 기간		
⑤ 방문 경로		
⑥ 승인 조건		
⑦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북한, 남한) 방문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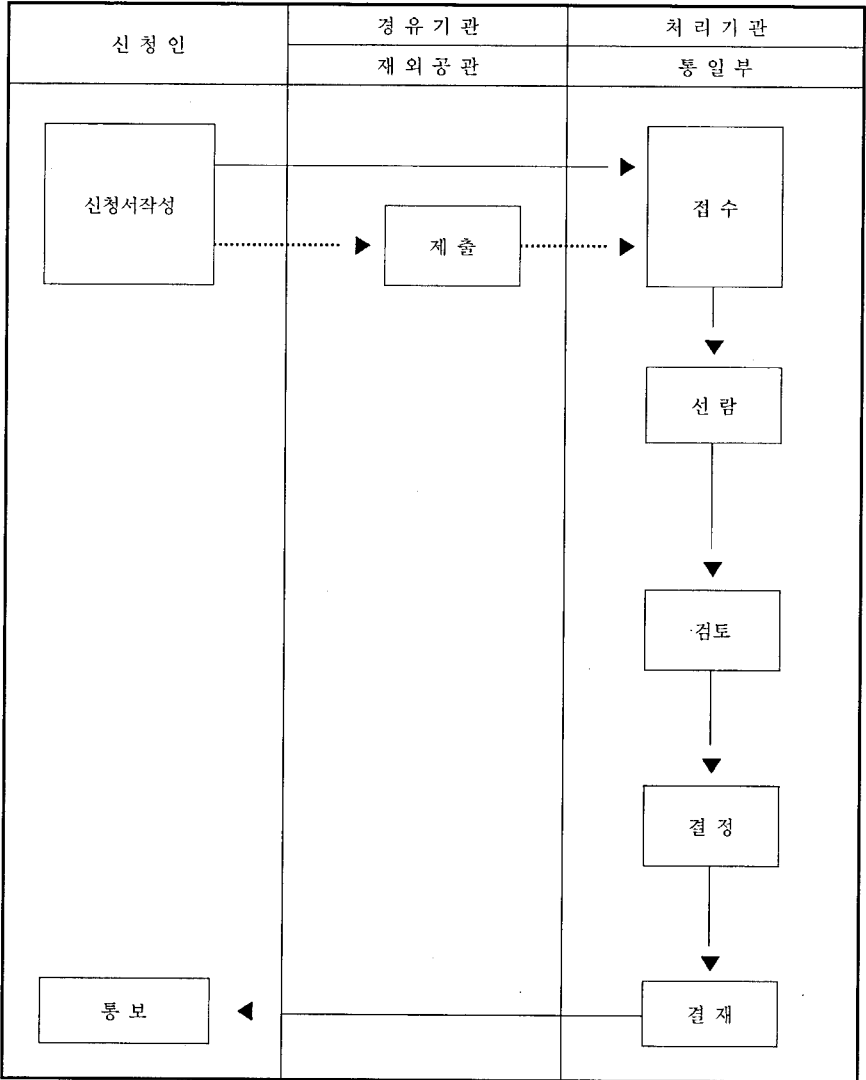
(앞면)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방문증명서번호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연락처	(전화 :)		
②방문 승인 내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연장 기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④연장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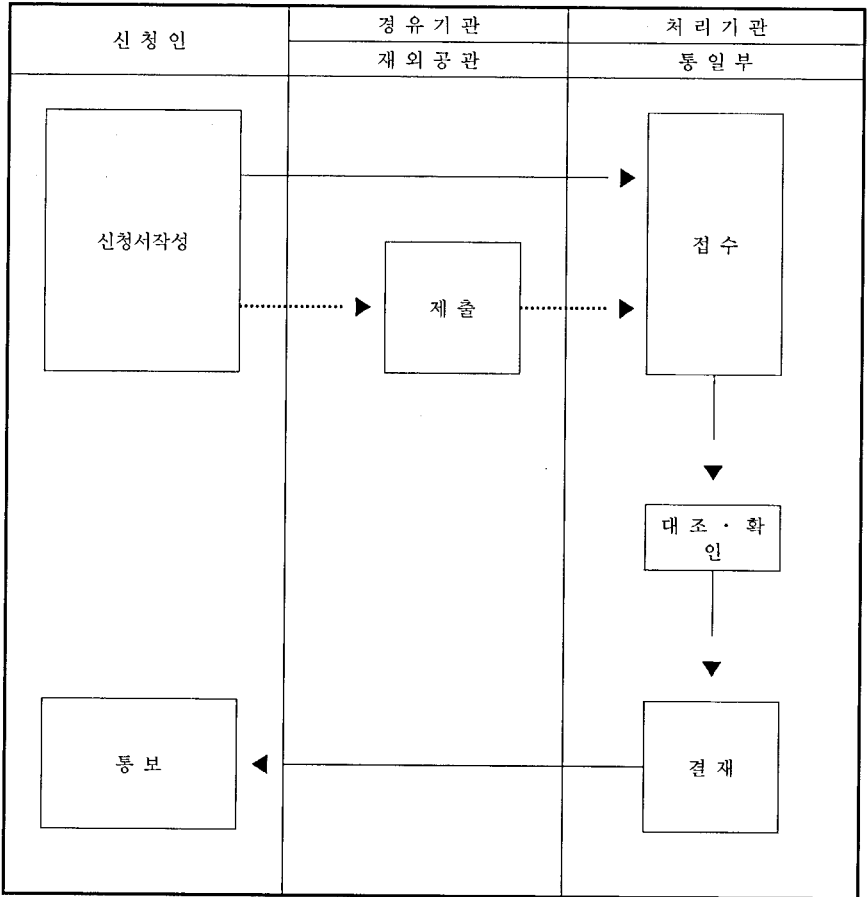
북한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방문자 인적사 항	성 명		성 별	남·여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②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③방문 대상자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④방 문 목 적					
⑤방 문 경 위 (입북비자 획득 등)					
⑥방 문 지 역 및 방 문 기 간(일정)					
⑦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함)					
⑧방 문 계 획 및 결 과					
⑨방 문 경 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p>					
<p>※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록합니다.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p>					

210mm×297mm(일반용지)×g/m²(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시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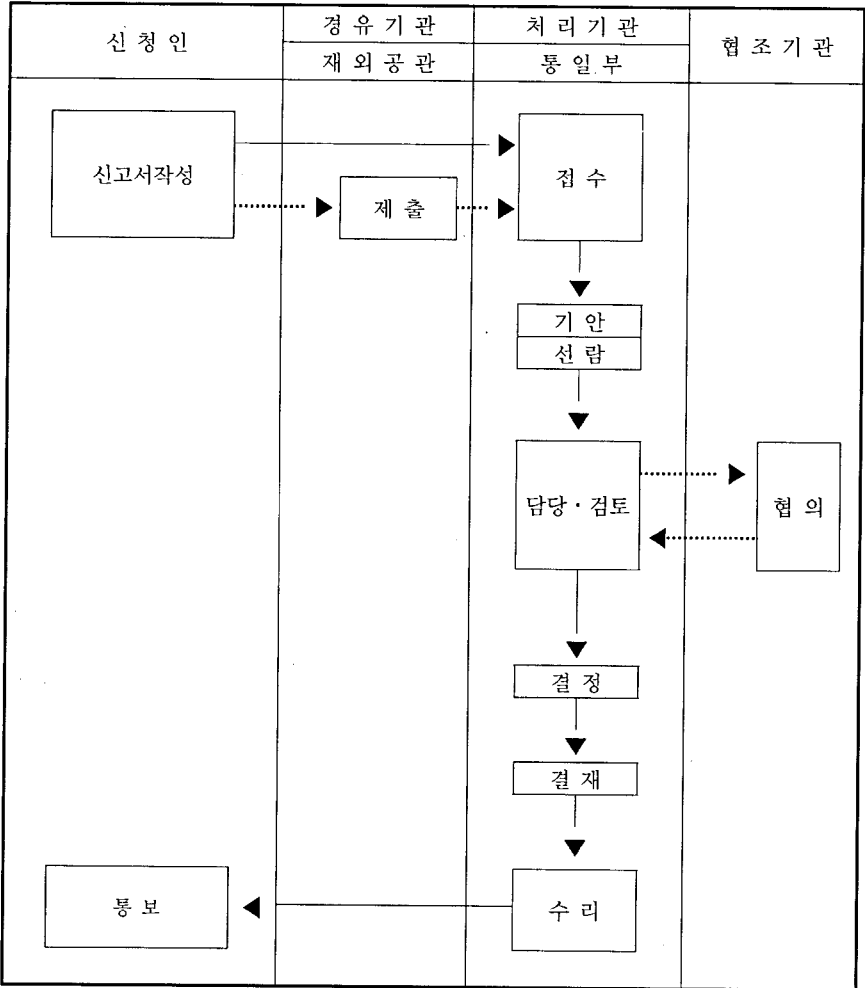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첨부서류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수리 번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① 접촉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②접촉 대상자	성명	
	소속 및 직위	
③접촉 목적		
④접촉 기간 및 장소		
⑤접촉 방법		
⑥수리 조건		
⑦수리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 · 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③접 촉 목 적					
④접 촉 경 위 (접촉앞선 및 중개인 포함)					
⑤접 촉 일 시 및 장 소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북한 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판용품))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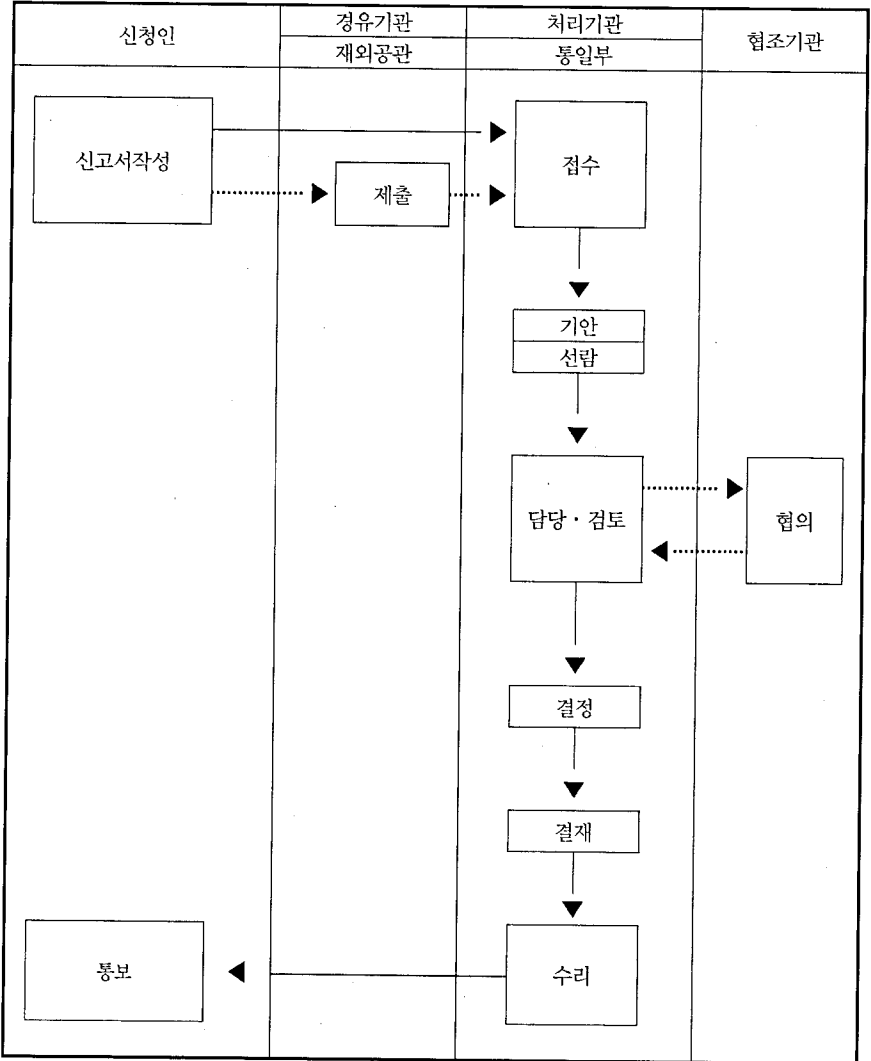
(앞면)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접촉인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성별
	접촉신고 수리 날짜 및 수리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②연장 기간	연장 전		연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③연장 사유				
④북한주민 접촉경과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사업추진에 수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직장명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방문지 주소·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탑승편명) ()		
방문예정기간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mm×118mm 일반용지(OCR급) 105g/m²(투급)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반출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인)		⑧ 거래형태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 업 자 등록번호	⑨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인)					
③ 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⑩ 금 액			
⑤ 선 적 항		⑪ 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⑫ 가 격 조 건			
⑬ HSK번호	⑭ 품 명 및 규 격	⑮ 단 위 및 수 량	⑯ 단 가	⑰ 금 액	
⑱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통일부장관 귀하</p>					
<p>*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p> <p>* 첨부서류: 뒷면 참조</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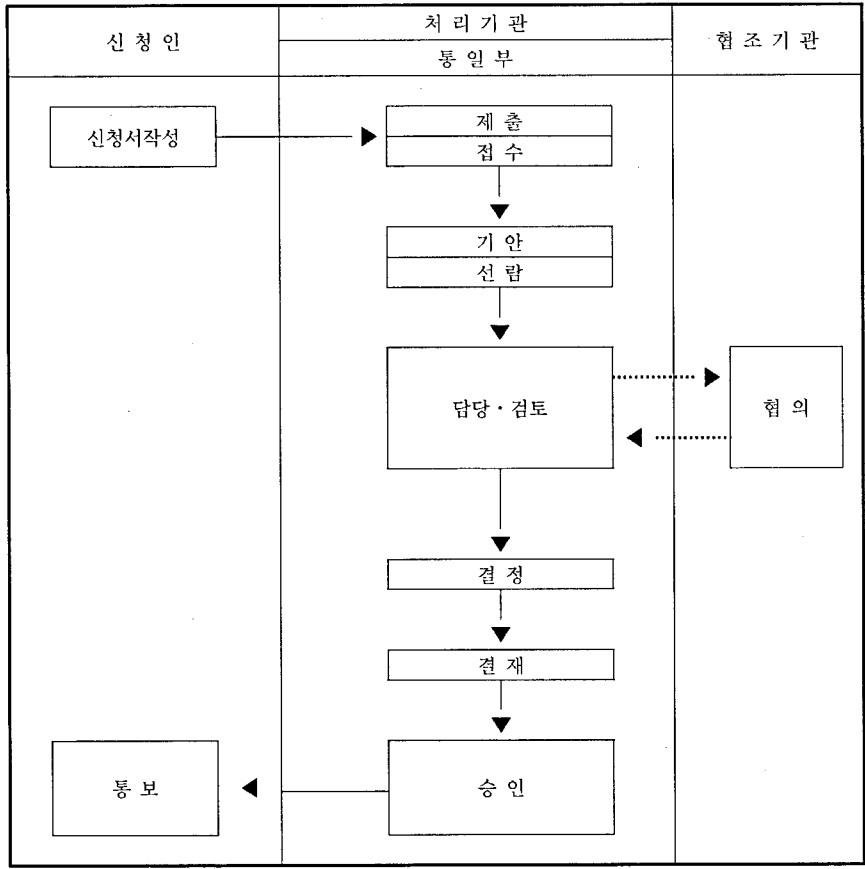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반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입자(상호·주소 ·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⑥ 공 급 자		
			⑦ 거래 형태		
② 위탁자(상호·주소 ·성명·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⑧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반입 목적			⑨금 액		
④ 원 산 지			⑩결 제 기 간		
⑤ 선 적 항			⑪ 가격조건		
⑫ HSK번호	⑬ 품 명 및 규 격		⑭ 단위 및 수량	⑮ 단 가	⑯ 금 액
⑰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p> <p>※ 첨부서류 : 뒷면 참조</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합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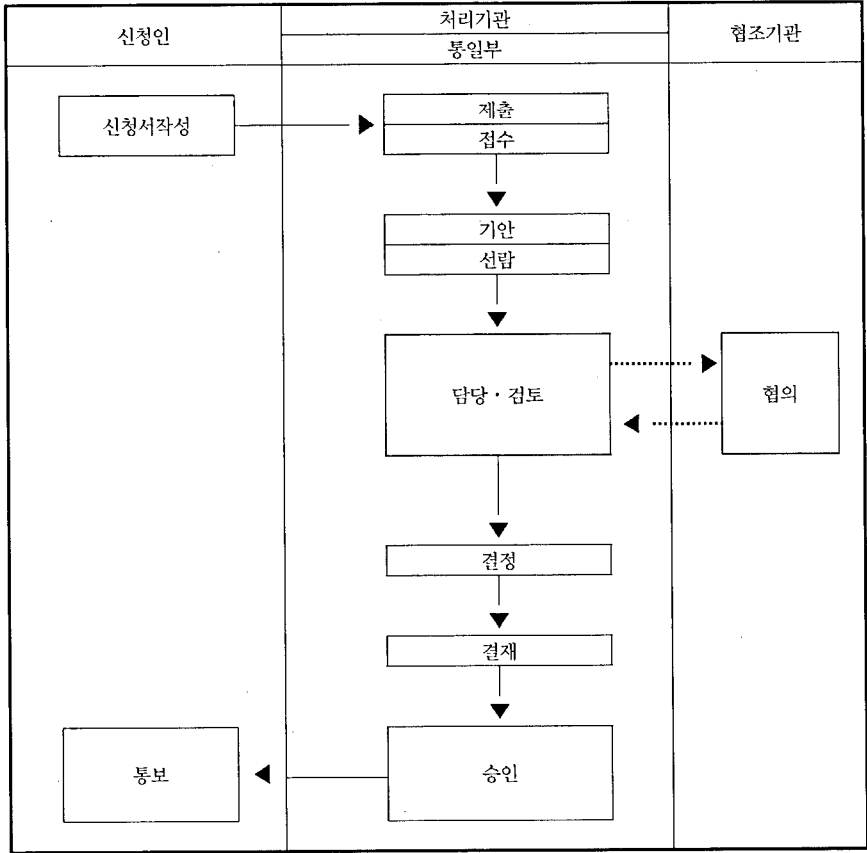


(뒷쪽)

※ 첨부서류

1. 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방과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방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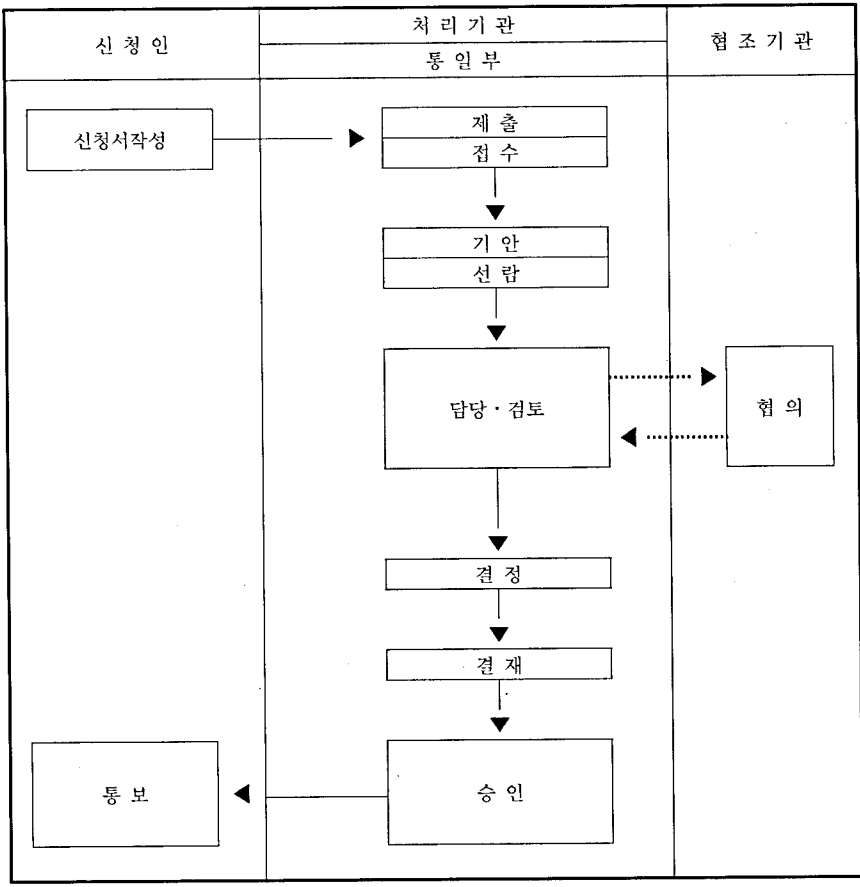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반 입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 해당시
판매방법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메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실제 반출자					
반입 예정일					
실제 반입자					
반입 경로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o 해당시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메일				
그 밖의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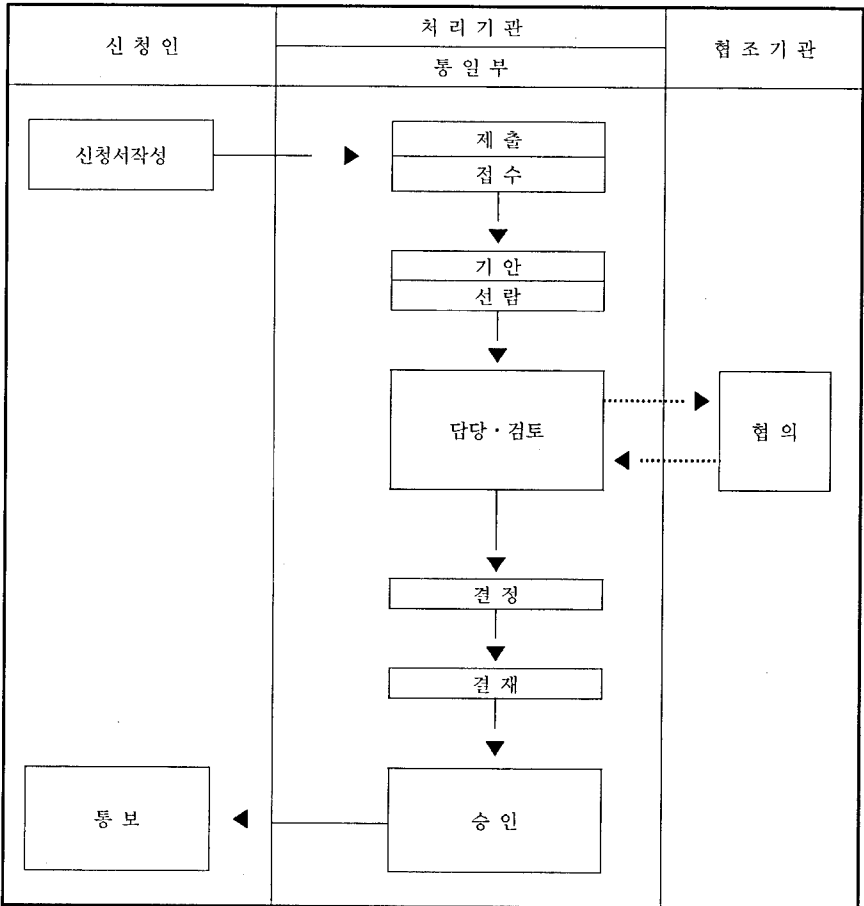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50g/m²(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승인번호	반출 승인서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⑧ 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금 액		
⑤ 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⑨ 가격조건		
⑩ HSK번호	⑪ 품 명 및 규 격	⑫ 단 위 및 수 량	⑬ 단 가	⑭ 금 액
⑮ 승 인 조 건				
⑯ 승인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합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승인번호		반입 승인서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⑥ 공급자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반입 목적		금 액			
④ 원산지		결제기간			
⑤ 선적항		⑧ 가격조건			
⑨ HSK번호	⑩ 품명 및 규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가	⑬ 금액	
⑭ 승인조건					
⑮ 승인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통일부장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승인번호		반출입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반 출	⑨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③ 반출입 목적			반 입	금 액	
④ 계약상대방				결제기간	
구 분	반 출	반 입	⑩ 가격조건		
⑤ 원산지			⑪ 결제조건		
⑥ 선적항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⑦ 도착항			금 액		
반출물품의 명세			결제기간		
⑬ HSK번호	⑭ 품명 및 규격		⑫ 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⑬ HSK번호		
			⑭ 품명 및 규격		
			⑮ 단위 및 수량		
			⑯ 단가		
			⑰ 금액		
⑳ 승인조건					
㉑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통일부장관 직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할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승인번호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고유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인)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승 인 조 건			
⑥ 승인유효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①반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입품 상세내역

②반입품	품명	상표	수량
	북한내 생산단위(공장·농장등)	생산단위 소재지	생산단위 소속

거 래 정 보

③북한교역당사자	④원산지증명번호
⑤중개상명	소재지

⑥수송경로	출발지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⑦대금결제현황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장	<input type="checkbox"/> 송금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액 \$	신용장번호	결제계좌번호(수취인), 송금액(\$)	

유 통 정 보

⑧유통방식	<input type="checkbox"/> 자가판매	<input type="checkbox"/> 도매상판매	<input type="checkbox"/> 소매판매	<input type="checkbox"/> 실수요자납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⑨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납품가	종량	총액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반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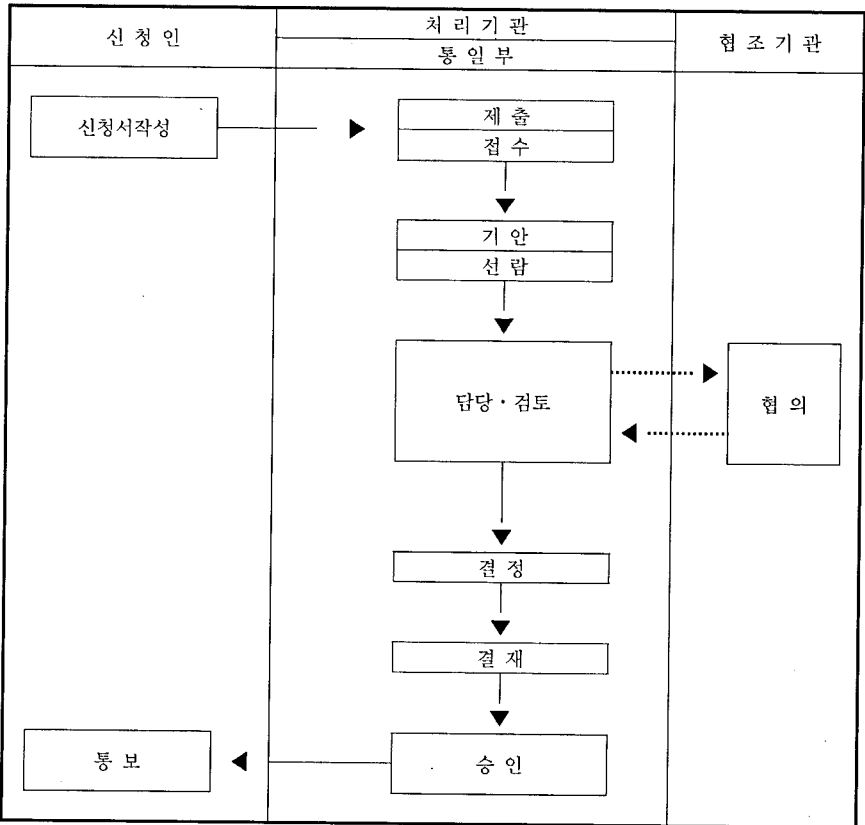
반출입 결과보고서					
① 반출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입품 상세내역					
② 반출입품	품명	상표	수량	사양 및 규격	제조사
거래정보					
③ 북한내 사용회사		사용회사 소재지		사용회사 소속	
④ 반출입품 사용처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 등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반출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제합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의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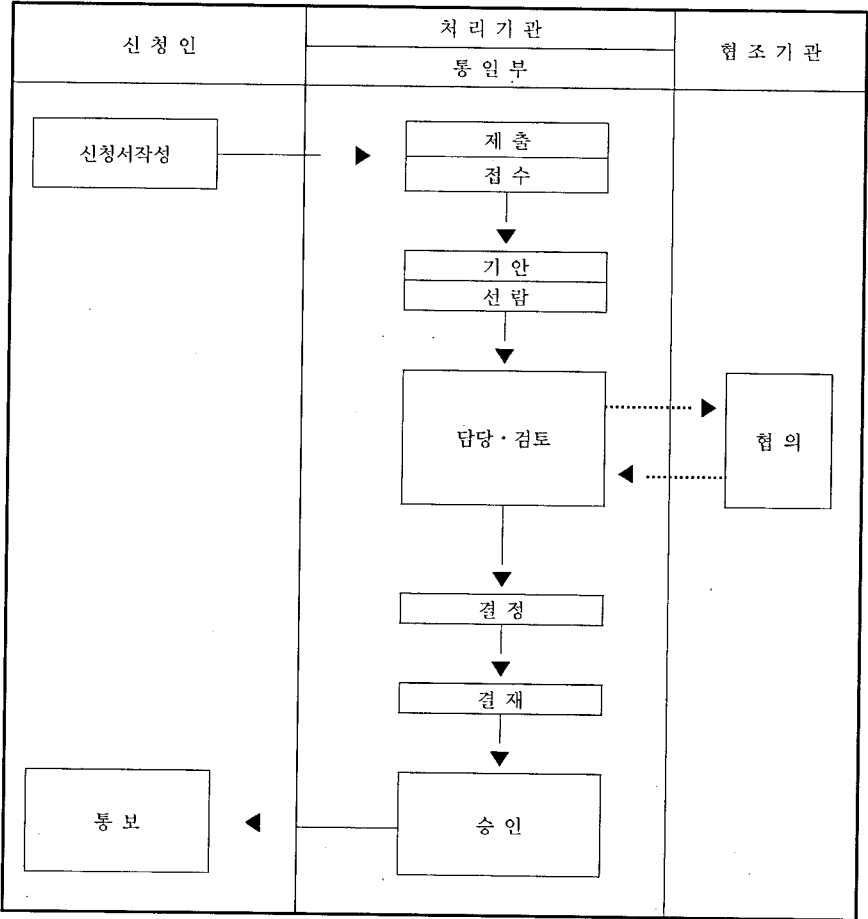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승인번호		협력사업 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② 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승인 조건				
⑤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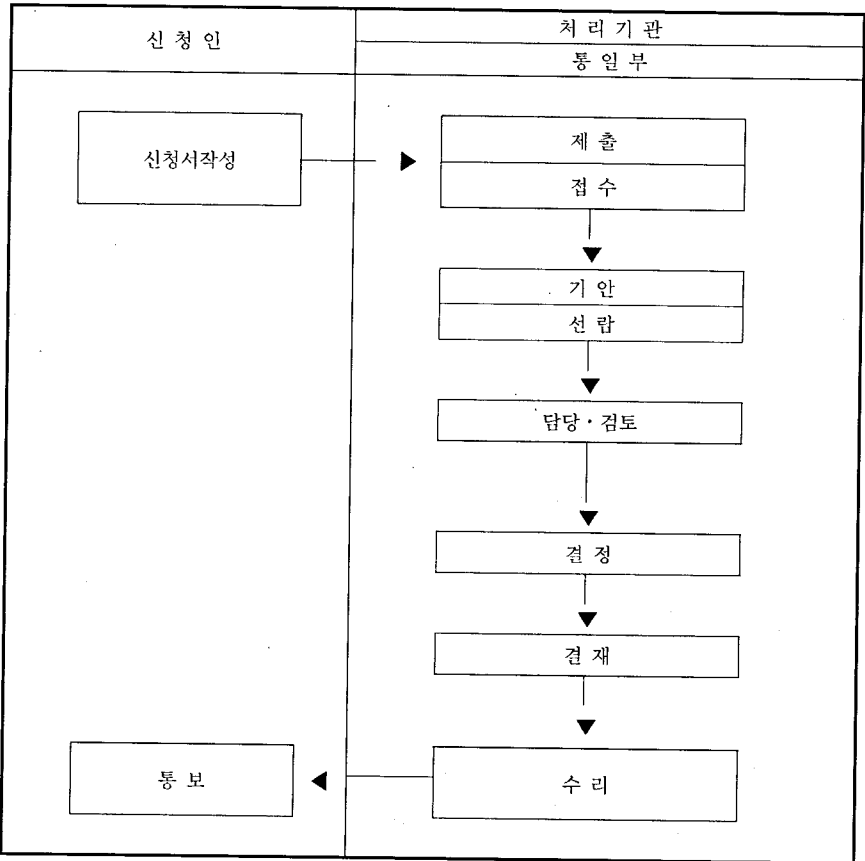
승인번호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변경전 승인 사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승인 조건				
⑤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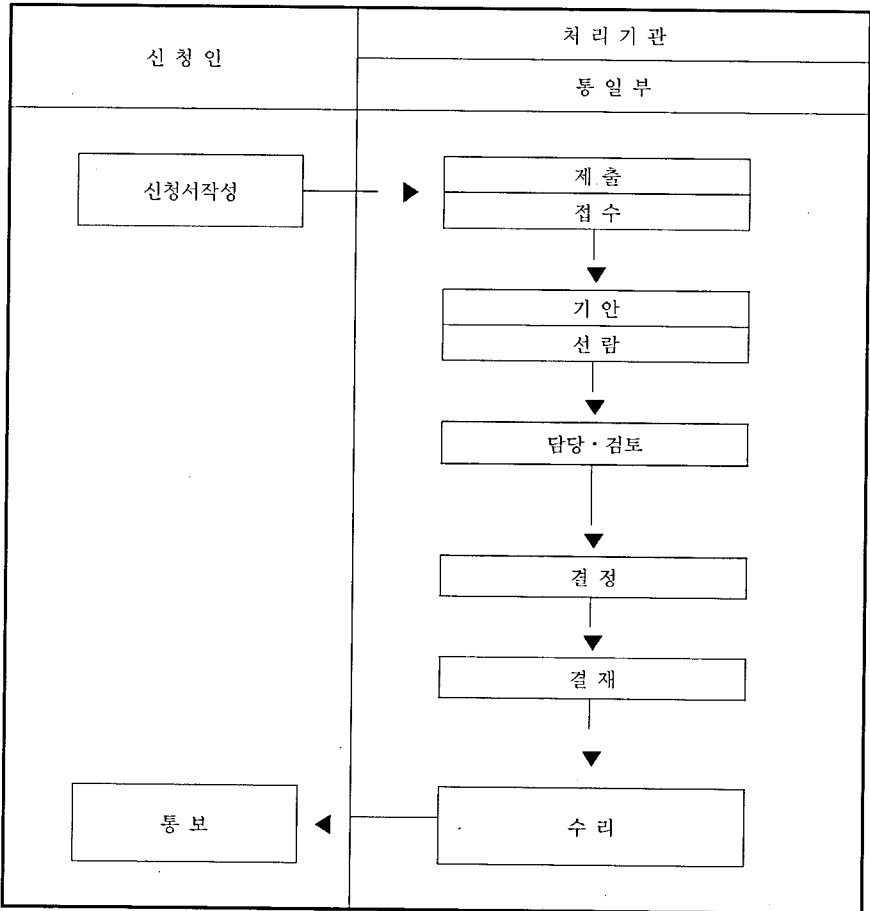


(뒷 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①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② 상 대 자	상 호 (법인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 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수리 조건				
⑤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수리 사항	수리 일자		수리번호	
③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수리 조건				
⑤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 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앞 면)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종, 차종, 기종)	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운행 목적						
④운행 용도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운행 기간						
⑥운행 노선						
⑦운행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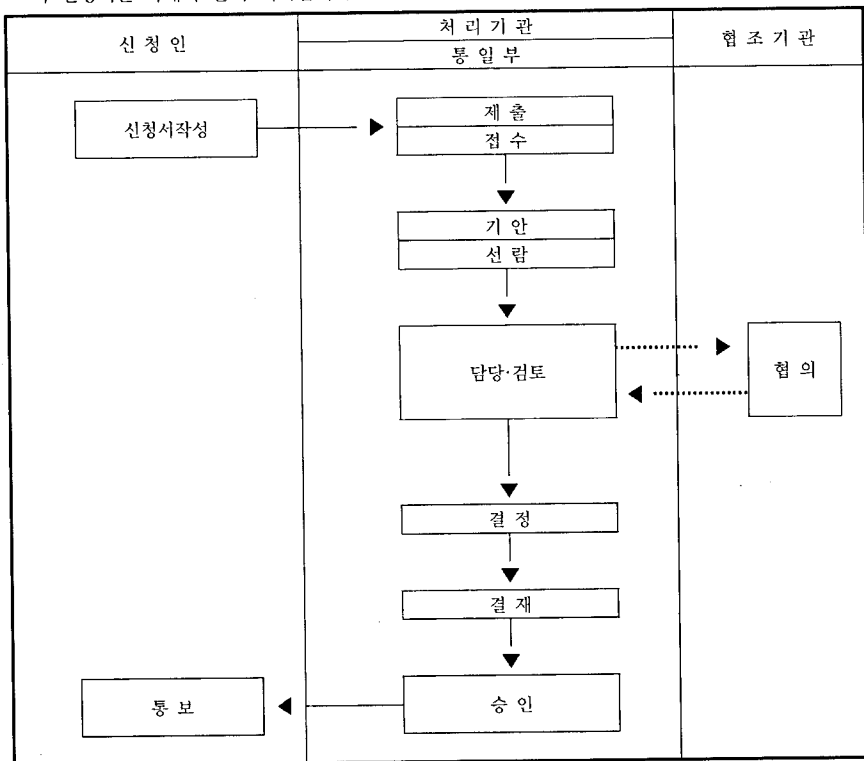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60g/m²(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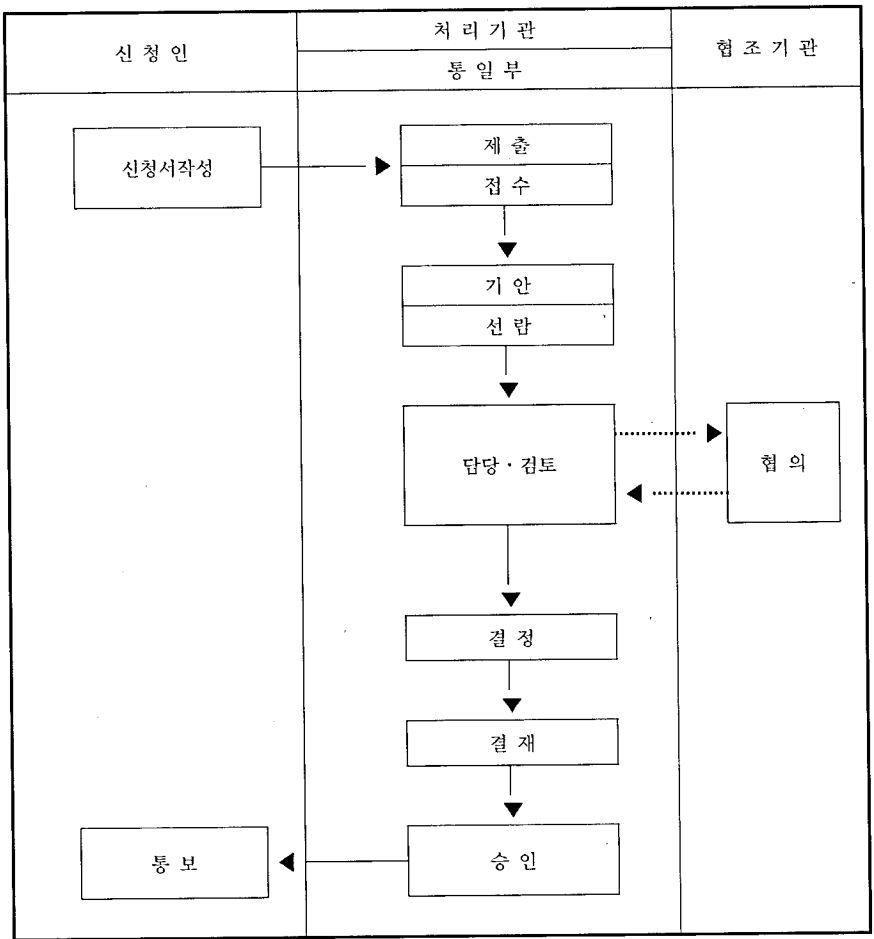




(뒷 면)

- ※ 첨부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인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①신청인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운항 목적							
④운항 용도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운항 승인 유효기간							
⑥운항 노선							
⑦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⑧승인 조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환용품))



[별지 제43호사시] (앞쪽)

재 호 조사공무원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사진 (2.5×3cm) </div> 김 ○ ○ 위 사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 장관 서인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시설의 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4호서식]

조 사 계 획 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장소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 , e-mail:)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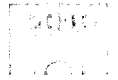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영치조서			
영치 일자		영치 장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영치 목적			
영치 물건 (품명·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50px;">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한용품)))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87호, 2010. 3.26,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 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전문개정 2009.5.28]

제 5 조 (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 조 삭제 <1993.12.31>

제 7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 사항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8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용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 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전문개정 2009.5.28]

제9 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 (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10187호, 2010. 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10.10]

[대통령령 제21079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 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 조 삭제 <2005.12.14>

제4 조 삭제 <2005.12.14>

제5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 (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3.3.6, 1994.12.23, 1999.5.24, 2005.12.14, 2008.2.29>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 (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 ② 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10>

- 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 제11조** 삭제 <2002.12.30>
-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 [전문개정 2008.10.10]
-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제15조** (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 (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 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21079호, 200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 2]

[통일부령 제49호, 2008.12. 2, 일부개정]

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 조 (협의회 의결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1, 2003.2.6, 2004.5.14, 2008.12.2>

1.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 :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자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이상의 보증 5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 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6, 2004.5.14, 2008.12.2>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도에의 기금사용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6. 삭제 <2008.12.2>

부칙 <제49호, 2008.12. 2>

제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조 (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26]

[법률 제10188호, 2010. 3.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
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
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
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
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
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 3 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 4 조 (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 5 조 (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 6 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7 조 (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8 조 (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 조 (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2조 (등록대상)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3조 (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4조 (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15조의2

제16조 (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 (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

으로 하여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3 (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 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4 (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17조의4

제18조 (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18조의2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0조 (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0조 (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20조제2항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 (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의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22조의2

제23조 (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 (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의2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24조의2

제25조 (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3 (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4 (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26조의4

제27조 (보호의 변경)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 제27조 (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8조 (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9조 (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회를 소집하고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30조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32조 (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3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4조 (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26][시행일 : 2010.9.27] 제34조

부칙 <제10188호, 2010. 3.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게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1조의2 (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1]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10.20]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①협회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3.31>

제 4 조 (소위원회) ①협회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 5 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 6 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

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7.6.28>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 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

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8.12.31>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7.31>

제16조 (보호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손괴(損壞)한 자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8.12.31]

제24조 (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6조 (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9.7.3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28조

(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6.28>

⑤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6.28>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8]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1>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7.31>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7.31>

제31조 [중전 제31조는 제35조의3으로 이동<2000.1.28>]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2009.7.31, 2009.1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신설 2009.7.31>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28, 2009.7.31>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④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⑥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9.7.31>

[본조신설 2000.1.28]

제34조의3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2.6.3, 200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9.7.31>

[본조신설 2000.1.28]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31조에서 이동<2000.1.28>]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9.7.31>

1. “가”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2007.6.28, 2009.7.31, 2009.9.2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9.21>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

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 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6.3, 2004.12.18, 2007.6.28, 2009.7.31>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2.6.3>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12.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4.12.18>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상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

12.31, 1999.3.31, 2002.6.3>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7.3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2009.7.3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5조의2 (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

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1]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

제47조의2 (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 [본조신설 2000.1.28]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9.7.31>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2002.6.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75호, 2010. 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8. 5]
[통일부령 제53호, 2009. 8. 5,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 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

제3 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①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②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개정 2009.8.5>)**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8.5>
- [본조신설 2007.8.10]

- 제 4 조 (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

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 5 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5>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 6 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②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 10.30,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 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 ③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본조신설 2004.12.18]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

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부칙 <제53호, 2009. 8.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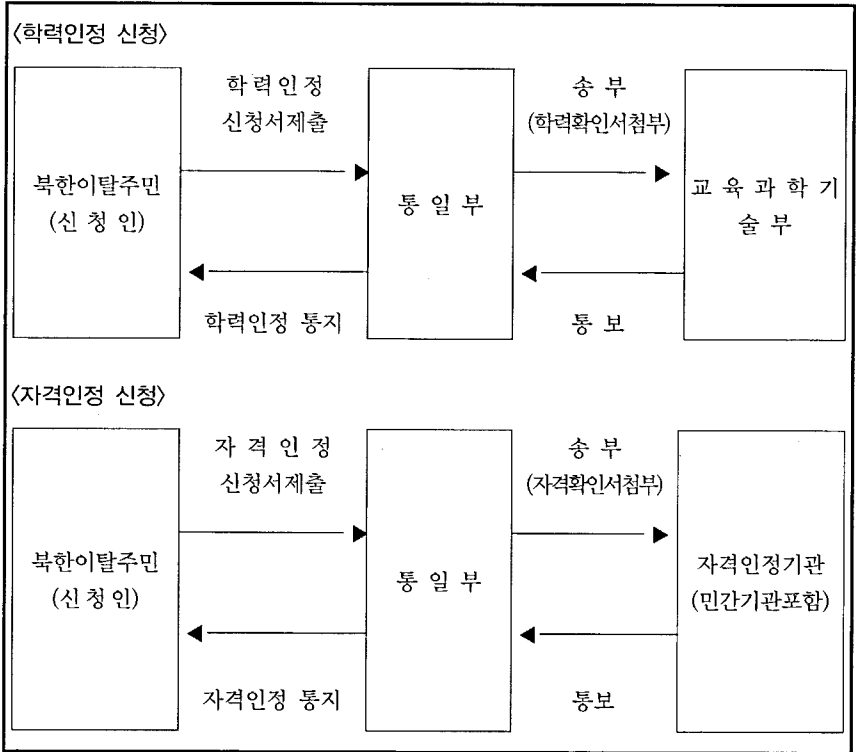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input type="checkbox"/> 자격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입국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수학력	기간	이수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종목	등급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사항	기간	근무지	직책	비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력·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발행연도 - 제 호 <h2 style="margin: 0;">학 력 확 인 서</h2>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입 국 일
이 수 학 력	시 작 일	종 료 일	학 교	학 년	전 공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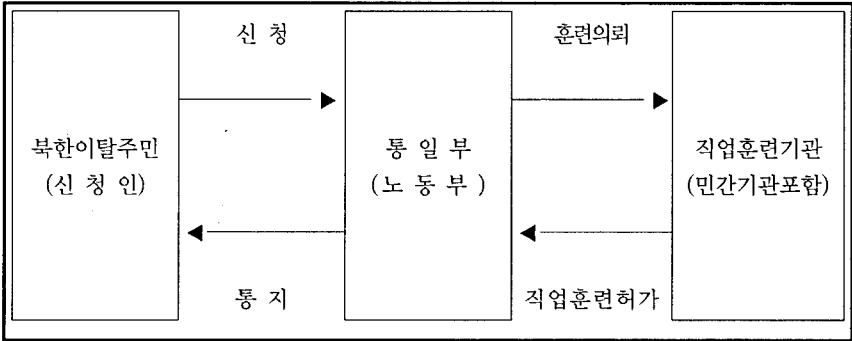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9.8.5>

발행연도 -제 호 <h2 style="margin: 0;">자 격 확 인 서</h2>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입국일	
북한 자격 사항	취득일	자 격 종 류	자 격 증 보 유 여 부	
북 한 경력 사항	기 간	내 용	직 책	비 고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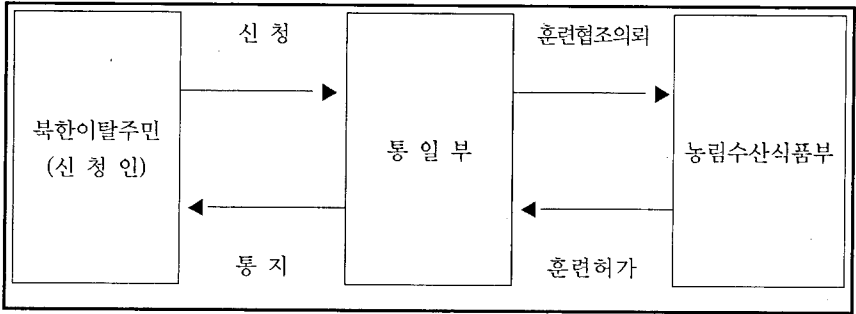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용 도		
신청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입국일		
	주 소					
배우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보호결정 여부	보호결정 사실 있음			보호결정 사실 없음	
		()			()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호결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통일부장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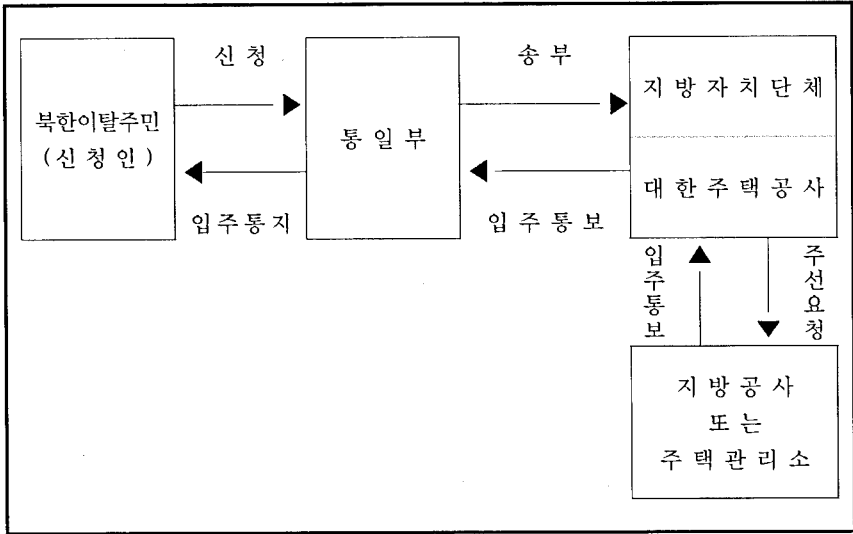
(앞 쪽)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임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자택)	
가족사항	성명	관계	성명	관계	
희망주택사항	주택형	면적(평형)	희망지역		
	아파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주택분양·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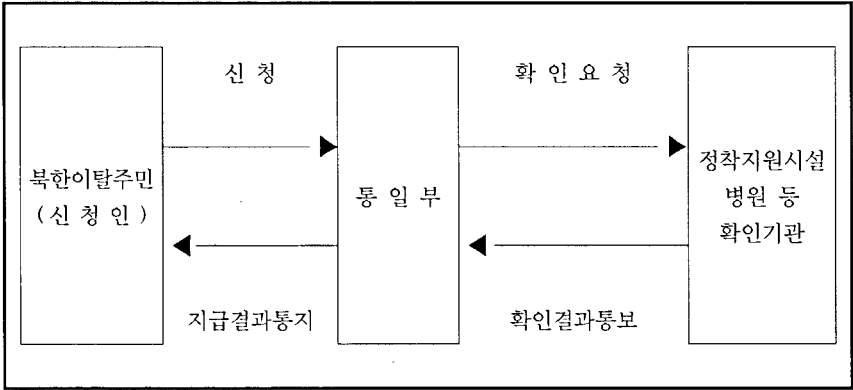
(뒤 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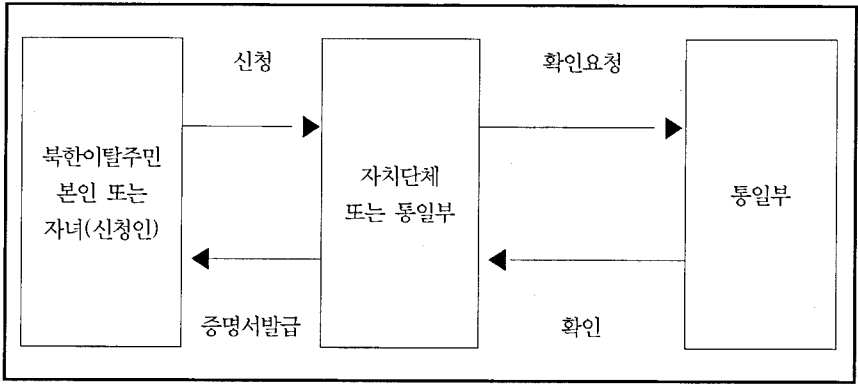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8.5>

접수번호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학교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취학자	등명	
보조사업의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학비 지원			
보조사업의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비 보조			
보조사업 소요경비	소요경비총액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지원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대학교총(학)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 하</p>				
구비서류			수수료	
·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통일교육 지원법·시행령

- 통일교육 지원법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0. 4.20]

[법률 제9800호, 2009.10.19,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 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

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4 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5 조 삭제 <2008.12.31>

제 6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2009.10.19))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 7 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8 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 9 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

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9800호, 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4.20]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20>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다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 4 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20]

제7 조 (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20>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 조 (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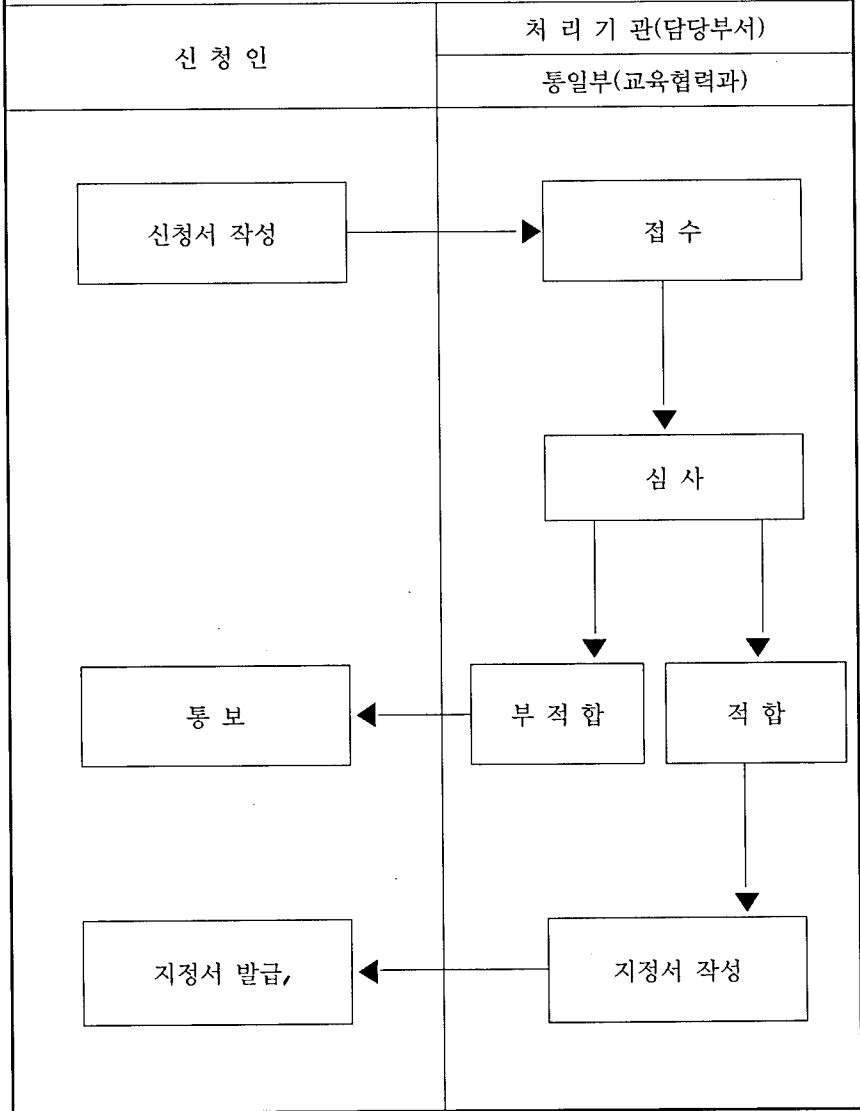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일 제 호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주 소: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을(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중) 120g/m²]

(앞 쪽)

계 호

통일교육위원증

사 진
3cm×4cm
(모자갈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통 일 부

보존용지(1종) 55mm× 80mm (120g/m²)

(색상: 연노랑색)

(뒤 쪽)

통일교육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입 기 :

위 사람은 통일교육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통일부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
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보존용지(1종) 55mm× 80mm (120g/m²)

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0호, 2010. 3.26, 제정]

제1 조 (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 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 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

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6 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9 조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0190호, 2010. 3.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